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2021년도 예산안 개요¹⁾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20.11. 2)를 통하여 '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S-방역체계 강화**, ②**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③**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를 통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21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40조 479억원으로서 회계간 전·출입 4조 6,98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5조 3,493억원임
 - 서울시는 금번 예산안을 제출하며 자치구 지원 5조 4,541억원, 교육청 지원 3조 4,090억원, 행정운영경비 1조 9,417억원, 재무활동 1조 4,863억원을 편성요청하였고, 순계예산에서 자치구 지원, 교육청 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는 23조 581억원으로

 - 사업비중 ①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수요증가로 4차례의 추경을 통해 증액된 '20년도 최종예산(16조 477억원)보다 △19.2%(△3조 762억원) 감소한 12조 9,715억원, ②산업경제분야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지원예산 등이 편성되었던 '20년도 최종예산(1조 7,230억원)보다 △53.4%(△9,197억원) 감소한 8,033억원, ③공원·환경분야는 '20년도 최종예산(2조 5,629억원)보다 △10.4%(△2,665억원) 감소한 2조 2,964억원을 편성요청하였음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도로·교통분야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20년도 최종예산(2조 3,225억 원)보다 10.4%(2,416억원) 증가한 2조 5,64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2. 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시의 '21년도 예산안은 40조 479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11.0%, △4조 9,569억 7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기금운용계획안은 2조 364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계획(2조 4,485억 7,500만원)보다 △16.8%, △4,121억 4,200만원 감액계획된 것임

〈표 1-1〉 2021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예	산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일 반 회 계	27,665,803	32,528,018	△4,862,215	△14.9
	특 별 회 계	12,382,129	12,476,821	△94,691	△0.8

구	분	2021년도 (계획안)	2020년도 (당초계획)	증 감	증 감 륜
기 금	(1 8 개)	2,036,433	2,448,575	△412,142	△16.8

3. 예산안 개요

(1) 2021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40조 479억 3,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27조 6,658억 300만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2조 3,821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음

〈표 1-2〉 2021년도 예산안 회계별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계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일반회계		27,665,803	32,528,018	△4,862,215	△14.9
특별회계		12,382,129	12,476,821	△94,691	△0.8
공기업특별회계		1,660,292	1,881,153	△220,861	△11.7
수도사업특별회계		738,100	814,191	△76,091	△9.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2,192	1,066,962	△144,770	△13.6
기타특별회계		10,721,837	10,595,667	126,170	1.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07,773	1,421,558	△13,784	△1.0
교통사업특별회계		1,574,042	1,332,234	241,808	18.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6,773	367,276	△50,502	△13.8
주택사업특별회계		2,528,196	2,925,334	△397,138	△13.6
도시개발특별회계		2,125,797	1,918,296	207,501	10.8
균형발전특별회계		165,136	228,555	△63,419	△27.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624	23,358	2,266	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68,567	1,482,869	185,698	12.5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4,367	39,296	△4,928	△12.5
소방안전특별회계		875,557	856,888	18,668	2.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예산(안)」 p.13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조 6,658억 3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32조 5,280억 1,800만원)보다 △14.9%, △4조 8,622억 1,5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20조 237억 6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19조 5,524억 2,500만원)보다 2.4%, 4,712억 8,1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고, **세외수입**은 1조 7,749억 1,7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1조 7,045억 400만원)보다 4.1%, 704억 1,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0년도 최종예산(1,770억 6,900만원)보다 1.7%, 30억 2,300만원 증액된 1,800억 9,200만원으로 편성요청하였고, **보조금**은 5조 2,678억 3,2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8조 609억 1,200만원)보다 △34.6%, △2조 7,930억 7,9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이며 **지방채**의 경우, '20년도 285억원보다 81억원 증가한 36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제출하였음

〈표 1-3〉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27,665,803	32,528,018	△4,862,215	△14.9
지방세 수입	20,023,706	19,552,425	471,281	2.4
세외수입	1,774,917	1,704,504	70,412	4.1
지방교부세	180,092	177,069	3,023	1.7
보조금	5,267,832	8,060,912	△2,793,079	△34.6
지방채	36,600	28,500	8,100	2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2,654	3,004,607	△2,621,953	△87.2

2) 특별회계

-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0년도 최종예산보다 △0.8%, △946억 9,100만원 감액된 12조 3,821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외수입**은 2조 8,849억 4,6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2조 6,945억 600만원)보다 7.0%, 1,904억원 증액 편성요청되었음
- **보조금**은 1조 8,667억 8,6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2조 92억 5,600만원)보다 △7.0%, △1,424억 7,000만원 감액 요청된 것이며
- **지방채**는 2조 1,940억 8,3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2조 8,184억 5,400만원)보다 △22.1%, △6,243억 7,1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하고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조 4,363억 1,3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4조 9,546억 400만원)보다 9.7%, 4,817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1-4〉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12,382,129	12,476,821	△94,691	△0.8
	세 외 수 입	2,884,946	2,694,506	190,400	7.0
	보 조 금	1,866,786	2,009,256	△142,470	△7.0
	지 방 채	2,194,083	2,818,454	△624,371	△2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36,313	4,954,604	481,709	9.7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1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0조 479억 3,3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0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4.9\%$, $\Delta 4$ 조 8,622억 1,500만원 감액된 27조 6,658억 3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 특별회계는 '20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0.8\%$, $\Delta 946$ 억 9,100만원 감액된 12조 3,821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4조 6,985억 8,600만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조 638억 1,200만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6,347억 7,400만원 전출되며,

- 법정 의무경비는 10조 4,675억 3,300만원으로
 - 자치구 지원은 5조 4,541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4,124억 800만원과 특별회계 416억 9,900만원,
 - 교육청 지원은 3조 4,090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4,016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73억 8,600만원,
 - 채무상환은 1조 1,089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04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9,284억 8,500만원,
 - 반환금은 3,088억 5,900만원 일반회계 2,452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 636억 1,900만원,
 -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에만 1,865억 8,100만원이 편성됨

- 회계간전출입과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4조 8,818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조 1,756억 4,700만원, 특별회계 10조 7,061억 6,500만원임

〈표 1-5〉 2021년도 총계·순계·실집행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규 모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일 반 회 계	27,665,803	32,528,018	△4,862,215	△14.9
특 별 회 계	12,382,129	12,476,821	△94,691	△0.8

회 계 간
전 출·입
차 감

회 계 간 전 출·입 : 4조 6,985억 8,600만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4조 638억 1,200만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6,347억 7,400만원

순 계 규 모	35,349,346	41,047,438	△5,698,092	△13.8
일 반 회 계	23,601,990	29,136,024	△5,534,034	△18.9
특 별 회 계	11,747,356	11,911,414	△164,058	△1.3

법 의 경 차
정 무 비 감

법 정 의 무 경 비 : 10조 4,675억 3,300만원
 일 반 회 계 9조 4,263억 4,200만원 특 별 회 계 1조 411억 9,100만원
 -자치구 지원 5조 4,124억 800만원 -자치구 지원 416억 9,900만원
 -채 무 상 환 1,804억 1,600만원 -채 무 상 환 9,284억 8,500만원
 -기 금 전 출 금 1,865억 8,100만원 -기 금 전 출 금
 -반 환 금 등 2,452억 4,000만원 -반 환 금 등 636억 1,900만원
 -교 육 청 지 원 3조 4,016억 9,500만원 -교 육 청 지 원 73억 8,600만원

실 집 행 규 모	24,881,812	29,869,460	△4,987,648	△16.6
일 반 회 계	14,175,647	18,790,963	△4,615,316	△24.5
특 별 회 계	10,706,165	11,078,497	△372,332	△3.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305 ('20.11.12) 재구성

2) 성질별 자원 배분

- '21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40조 479억 3,300만원)중 회계간 전출입 4조 6,985억 8,600만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5조 3,493억 4,600만원임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법정의무경비(교육청, 자치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23조 581억 3,3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27조 6,758억 100만원)대비 △16.6%, △4조 6,176억 6,8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자원배분은 사회복지 12조 9,714억 8,100만원(32.4%), 도로·교통 2조 5,640억 4,600만원(6.4%), 공원·환경 2조 2,964억 100만원(5.7%), 도시안전 1조 3,760억 4,400만원(3.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조 2,098억 4,200만원(3.0%), 산업경제 8,033억 1,900만원(2.0%), 문화관광 7,088억 1,400만원(1.8%) 등임

〈표 1-6〉 총계기준 2021년도 예산안(부문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40,047,933	100.0	45,004,840	100.0	△4,956,907	△11.0
행정운영경비	1,941,698	4.8	1,906,665	4.2	35,033	1.8
재무활동	6,184,913	15.4	5,856,040	13.0	328,873	5.6
교육청지원	3,409,082	8.5	3,701,354	8.2	△292,272	△7.8
자치구지원	5,454,107	13.6	5,864,980	13.0	△410,873	△7.0
사업비	23,058,133	57.6	27,675,801	61.5	△4,617,668	△16.6
사회복지	12,971,481	32.4	16,047,670	35.7	△3,076,189	△19.1
공원·환경	2,296,401	5.7	2,562,898	5.7	△266,497	△10.3
도로·교통	2,564,046	6.4	2,322,492	5.2	241,554	10.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209,842	3.0	1,361,379	3.0	△151,537	△11.1
산업경제	803,319	2.0	1,722,971	3.8	△919,652	△53.3
도시안전	1,376,044	3.4	1,615,341	3.6	△239,297	△14.8
문화관광	708,814	1.8	810,080	1.8	△101,266	△12.5
일반행정	915,483	2.3	1,071,415	2.4	△155,932	△14.5
예비비	212,696	0.5	161,553	0.4	51,143	3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910 ('20.11.26) 재구성

〈표 1-7〉 총계기준 2021년도 예산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40,047,933	100	45,004,840	100.0	△4,956,907		△11.0
	인 건 비	1,602,378	4.0	1,645,008	3.6	△42,630		△2.5
	물 건 비	1,271,148	3.1	1,442,872	3.2	△171,724		△11.9
	경 상 이 전	20,749,557	51.8	23,807,152	52.9	△3,057,595		△12.8
	자 본 지 출	6,152,269	15.3	7,332,588	16.2	△1,180,319		△16.1
	용자 및 출자	582,882	1.4	780,849	1.7	△197,967		△25.3
	보 전 재 원	680,528	1.7	574,412	1.2	106,115		18.4
	내 부 거 래	8,683,442	21.6	9,187,831	20.4	△504,388		△5.4
	예비비 및 기타	325,726	0.8	234,125	0.5	91,601		39.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예산(안)」 p.21~22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서울시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및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8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가 '21년도에 운용할 18개 기금(25개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조 364억 3,300만원으로 '20년도(2조 4,485억 7,500만원)보다 △16.8%, △4,121억 4,200만원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1-8〉 2021년도 기금운용(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안)	2020 ^{주1)}	증감	증감률
18개 기금 (25개 계정)	2,036,433	2,448,575	△412,142	△16.8

주1) 당초계획 기준

- 18개 기금의 '21년도말 조성액은 3조 6,067억 6,100만원으로 계획된바, '20년도말 조성액(3조 4,815억 1,500만원)보다 3.5%, 1,252억 4,6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9〉 2021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2021년도말 조성액 (B)	증 감 (C=B-A)	증감률 (D=C/A)
		수 입	지 출			
합 계	3,481,515	975,381	850,134	3,606,761	125,246	3.5
재 정 투 용 자 기 금	2,156,298	373,431	106,009	2,423,720	267,422	12.4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75,971	222,922	259,693	39,201	△36,770	△48.4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43,459	47,913	36,778	54,594	11,135	25.6
식 품 진 흥 기 금	62,671	2,991	5,293	60,369	△2,302	△3.6
기 후 변 화 기 금	101,877	15,275	21,005	96,146	△5,730	△5.6
사 회 투 자 기 금	4,347	15,806	19,300	854	△3,493	△80.3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6,345	37,948	39,512	14,781	△1,563	△9.5
성 평 등 기 금	24,217	453	1,070	23,600	△616	△2.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643	27,988	29,654	8,978	△1,665	△15.6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2,246	564	770	12,040	△205	△1.6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22,655	2,488	5,541	19,602	△3,052	△13.4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7,432	415	885	6,962	△470	△6.3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871	8,022	10,800	94	△2,777	△96.7
체 육 진 흥 기 금	53,763	10,769	11,196	53,336	△426	△0.7
감 채 기 금	582,808	9,966	143,788	448,986	△133,822	△22.9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166,687	149,493	106,010	210,170	43,483	26.0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62,829	16,052	15,268	63,612	783	1.2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34,006	363	13,106	21,264	△12,742	△37.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3,204	1,555	2,154	2,605	△599	△18.6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5,379	1,081	1,870	4,591	△788	△14.6
지 역 개 발 기 금	6,078	617	0	6,696	617	10.1
도 시 재 생 기 금	25,718	6,853	5,478	27,092	1,374	5.3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간접지원계정	0	2,001	1,910	91	91	순증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플라자계정	0	5,085	0	5,085	5,085	순증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0	15,317	13,036	2,280	2,280	순증

※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0~11을 재구성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 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으로 사료됨
- '21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공채 발행 및 차입금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제9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는 금년도와 동일한 6,000억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음
 - '21년도 일시차입한도는 6,000억원으로 일반회계 5,000억원, 특별회계 1,000억원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제출하였음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우회, 보완하는 제도인 바

- 상환액에 대해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년도에는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나 '21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 '21년도에는 ①일반회계에서 366억원을 발행하고 특별회계는 ②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919억원, ③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10억원, ④주택사업특별회계 2,456억원, ⑤도시개발특별회계 7,106억원, ⑥균형발전특별회계 348억원 등 총 2조 2,306억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표 2-1〉 2021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발행한도액 관련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 방 채 발 행 한 도 액	총 한도액 ①		2,804,150
		기 본 한 도 액	1,610,300
		별 도 한 도 액	1,193,850
		지 역 개 발 채 권 발 행 액	-
		도 시 철 도 공 채 발 행 액	773,850
		' 2 1 년 차 환 채 발 행 액	-
		지 역 일 자 리 사 업 (투 자 사 업)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420,000	
지 방 채 발 행 규 모	총 발행규모 ②		2,230,683
		일 반 회 계	36,600
		특 별 회 계	2,194,083
		기 금	-
한도내 추가발행 여력 ③=①-②		573,46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담당관-12461 ('20.10.30) 일부 재구성

- 지난 4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21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1조 6,103억원으로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①도시철도채권 발행액(7,738억원)과 ②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4,200억원)은 별도한도액(1조 1,938억원)에 해당됨

- 따라서, '21년도 지방채 발행 총한도는 기본한도액(1조 6,103억원)과 별도한도액(1조 1,938억원)을 합한 2조 8,041억원이며 예산총칙중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2조 2,306억원으로 총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며 예산총칙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27조 6,658억원)의 0.60%, 1,687억원, 목적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887억원임

- '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년도 본예산(1,896억원) 대비 △0.5%, △9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규모가 '20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액된 상태에서 일반예비비는 소폭 감액됨에 따라 예산안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조례에 따라 보고된 '20년도 1~3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21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수년간 예산의 이용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음

- '21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

방재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음으로써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 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입예산의 특징과 추계의 적정성

(1) 세입예산의 특징

- '21년도 예산안은 '20년도 최종예산(45조 48억 4,000만원)보다 △11.0%, △4조 9,569억 700만원 감액된 40조 479억 3,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0년도 최종예산(32조 5,280억 1,800만원)보다 △14.9%, △4조 8,622억 1,500만원이 감액된 27조 6,658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0년도 최종예산(12조 4,768억 2,100만원)보다 △0.8%, △946억 9,100만원이 감액된 12조 3,821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2〉 2021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일 반 회 계	27,665,803	32,528,018	△4,862,215	△14.9
특 별 회 계	12,382,129	12,476,821	△94,691	△0.8

※ 자료근거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은 물가의 자연상승, 세출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점증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20년도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확대 편성된 네 번의 추경으로 최종예산이 증가한 바, '21년도는 금년 대비 △11.0%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2)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7조 6,658억 3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32조 5,280억 1,800만원)보다 △14.9%, △4조 8,622억 1,5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표 2-3〉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27,665,803	32,528,018	△4,862,215	△14.9
지방세 수입	20,023,706	19,552,425	471,281	2.4
보통세	17,884,431	17,495,135	389,296	2.2
취득세	5,058,937	4,632,967	425,970	9.1
주민세	601,134	594,465	6,669	1.1
재산세	3,394,557	2,998,999	395,558	13.2
자동차세	1,186,241	1,104,975	81,266	7.4
레저세	42,702	124,873	△82,171	△65.8
담배소비세	580,150	564,349	15,801	2.8
지방소비세	1,824,280	2,041,427	△217,147	△10.6
지방소득세	5,196,430	5,433,080	△236,650	△4.4
목적세	1,938,270	1,835,212	103,058	5.6
지역자원시설세	304,768	300,925	3,843	1.3
지방교육세	1,633,502	1,534,287	99,215	6.5
지난년도수입	201,005	222,078	△21,073	△9.5
세외수입	1,774,917	1,704,504	70,412	4.1
경상적세외수입	1,281,671	1,276,804	4,867	0.4
재산임대수입	152,812	152,550	262	0.2
사용료수입	172,894	150,337	22,556	15.0
수수료수입	38,449	42,115	△3,666	△8.7
사업수입	881,440	874,192	7,248	0.8
징수교부금수입	14,024	14,715	△691	△4.7
이자수입	22,050	42,892	△20,842	△48.6
임시적세외수입	485,757	420,925	64,831	15.4
재산매각수입	106,761	58,114	48,646	83.7
자치단체간부담금	10,598	14,522	△3,923	△27.0
보조금반환수입	141,415	130,767	10,645	8.1
기타수입	195,667	189,453	6,213	3.3
지난연도수입	31,316	28,068	3,248	11.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488	6,774	713	10.5
과징금	410	333	77	23.1
변상금	3,334	3,207	127	4.0
과태료	3,611	3,062	548	17.9
부담금	131	171	△40	△23.4
지방교부세	180,092	177,069	3,023	1.7
보통교부세	146,422	140,782	5,640	4.0
특별교부세	0	10,917	△10,917	△100.0
소방안전교부세	33,670	25,370	8,300	32.7
보조금	5,267,832	8,060,912	△2,793,079	△34.6
지방채	36,600	28,500	8,100	2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2,654	3,004,607	△2,621,953	△87.3
보전수입 등	47,008	2,329,948	△2,282,939	△98.0
내부거래	335,645	674,659	△339,014	△50.2

※ 자료근거 : 2021년도 세입예산안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19조 5,524억 2,500만원)보다 2.4%, 4,712억 8,100만원 증액된 20조 237억 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조 7,045억 400만원)보다 4.1%, 704억 1,200만원 증액된 1조 7,74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1,770억 6,900만원)보다 1.7%, 30억 2,300만원 증액된 1,800억 9,200만원, **보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8조 609억 1,200만원)보다 △34.6%, △2조 7,930억 7,900만원 감액된 5조 2,67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금년도 최종예산(285억원)보다 28.4%, 81억원 증액된 366억원을 계획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최종예산(3조 46억 700만원)보다 △87.3%, △2조 6,219억 5,300만원 감액된 3,826억 5,4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임
- 세입재원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최종예산(19조 5,524억 2,500만원)보다 2.4%, 4,712억 8,100만원 증액된 20조 237억 6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여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투기 과세 강화,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 3법 개편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세입인 취득세, 재산세 등에 증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26.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5조 4,330억 8,000만원)보다 △4.4%, △2,366억 5,000만원 감액된 5조 1,964억 3,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①종합소득분과 ②법인소득분,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는 ③특별징수분, 부동산 매도에 과세하는 ④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며, 소득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경제성장, 임금상승 등 경기 변동에 탄력적인 세목으로 사료됨

-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 악화 및 민간 소비 지연에 따른 자영업자 업황 또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에는 세수둔화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저임금에 연동된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특별징수분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대규모 초과수납이 발생할 요인이 없어 동 세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및 확대재정 정책추진 등으로 총수요 확장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수 증가요인이 작용될 수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실제 경제여건에 따라 유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금년도 최종예산(4조 6,329억 6,700만원)보다 9.1%, 4,259억 7,000만원 증액된 5조 589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동 세목은 '21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의 25.3%를 차지하는 자주재원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상황, 금리변동 등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높은 세원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①지난 2월 20일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 ②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③7월 9일 “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④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⑤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본회의통과 관련”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여 다주택자·법인에 중과세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2-4〉 2020년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내용

발 표 일	주 요 내 용
'20.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시가 9억원 기준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60% → 시가 9억원 초과 부분은 30%, 시가 9억원 이하 부분은 50% 차등적용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20.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20.10.2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
'2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단기거래 세부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2주택자'는 8%로, '3주택 이상자 또는 법인'은 12%로 중과세 - (양도세) 단기양도차익 과세 강화(1년미만 40→60%, 2년미만 기본세율→60%)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기본세율(중과세율 10~20%→20~30%) - (종부세)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6.0% 구간 신설, 법인 최고세율 6% 적용 ○ 임대사업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4년) 임대 완전 폐지, 장기(8년)는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2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3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증액 상한(5%),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19772('20. 9.16) “2021년도 시세(市稅)수입 추계(안)”

- 특히, 7.10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매수세 및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였으나 매도 물량 감소로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는 바,

- 내년도에는 금년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매매가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세표준액(매매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수입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가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취득세** 수입 감수납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는 '21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17.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2조 9,989억 9,900만원)보다 13.2%, 3,955억 5,800만원 증액된 3조 3,945억 5,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세**는 ①'07년도까지 전액 구세로 징수되었으나, '08년도부터는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②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구성됨
- 동 세목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매매가격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가 전망됨

〈표 2-5〉 2020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구 분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월	'20년 6월	'20년 7월	'20년 8월	'20년 9월	'20년 10월
매매가격 지수 ^{주1)}	108.547	108.708	108.852	108.831	108.737	108.878	109.655	110.119	110.419	110.597
변동률	0.34	0.15	0.13	△0.02	△0.09	0.13	0.71	0.42	0.27	0.16

※ 자료근거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매매가격지수
주1) 주택매매가격지수 : 주택시장의 평균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100을 기준으로 가격증감 측정

- 다만, 당초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기로 계획하였으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어 세수 감수납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21년도 지방세 수입의 9.1%에 해당되는 세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2조 414억 2,700만원)보다 △10.6%, △2,171억 4,700만원 감액된 1조 8,242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2010년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세목임

〈표 2-6〉 최근5개년 서울시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비지출분 (5% 및 잔여분)	14.076	13.843	13.746	13.646	12.867
취득세 보전분(6%)	22.688	25.085	27.198	26.633	24.487
전환사업 보전분	해당없음('20년부터 적용)				267억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19772('20. 9.16) “2021년도 시세(市稅)수입 추계(안)”

- 동 세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정부의 '21년도 부가가치세 예산안은 '20년도 당초예산(68조 8,710억원)보다 △2조 2,175억원(△3.2%) 감액된 66조 6,53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21년도 서울시 **지방소비세** 수입은 금년 부가가치세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감소 영향이 반영된 금년도 정부 3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이나, 내년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추경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수 변경시 서울시 세입 또한 연동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세**는 '21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5.9%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조 1,049억 7,500만원)보다 7.4%, 812억 6,600만원 증액된 1조 1,862억 4,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 2020년 자동차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추계(A)	2020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B)	전망(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1,186,241	1,104,975	1,128,614	81,266	7.4	57,627	5.1
소 유 분	615,065	632,191	610,123	△17,126	△2.7	4,942	0.8
주 행 분	571,176	472,784	518,491	98,392	20.8	52,685	1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19772('20. 9.16) "2021년도 시세(市稅)수입 추계(안)"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인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되는 바,
-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목으로 **소유분 자동차세**(6,150억 6,500만원)의 경우,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비슷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으나 SUV나 고가차량 판매 확대 등의 요인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세목임
- 다만, 과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선납액 증가로 일부 세입 감소요인도 상존함
- **주행분 자동차세**(5,711억 7,600만원)는 금년도(4,727억 8,400만원)보다 20.8%, 983억 9,200만원 증액편성된 바, '20년 유가보조금 보전분 안분율이 예년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입 규모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도 경제회복시 석유류 수요 회복 등은 세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레저세**는 '21년도 지방세수입의 0.2%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1,248억 7,300만원)보다 △65.8%, △821억 7,100만원 감액된 427억 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가장 높은 감소세가 나타나

- **레저세**가 경마, 경륜, 경정의 승마(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과세 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목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수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21년도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예산은 금년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위기 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침체에 이은 고용불황, 내수와 수출부진 등 경제위기에 준 하는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세수 감소 요인을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소 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조 7,045억 400만원)보다 4.1%, 704억 1,200만원 증액된 1조 7,749억 1,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4,209억 2,500만원)보다 15.4%, 648억 3,100만원 증액된 4,857억 5,7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 특히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송파 위례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 특별징수분 652억 3,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0년도 최종예산(581억 1,400만원)보다 83.7%, 486억 4,600만원 증액된 1,06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재산매각수입**중에서도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은 '20년도 최종예산(579억 5,600만원) 보다 83.7%, 485억 5,400만원을 증액한 1,065억 1,100만원으로 증액편성한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1조 2,768억 400만원)보다 0.4%, 48억 6,700만원 증액된 1조 2,816억 7,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에서 금년도 보다 소폭 증액 편성한 것임

-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25억 5,000만원)보다 0.2%, 2억 6,200만원 증액한 1,52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03억 3,700만원) 대비 15.0%, 225억 5,600만원 증액한 1,728억 9,4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금년 8월 제3회 추경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도로점용료 △143억 4,800만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서울랜드, 무के도열차 사용료 △28억 3,900만원을 감액한 사례가 있어, '21년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서울대공원, 잠실운동장 등의 시설운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현재로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대규모 증액편성은 위험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수료수입**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421억 1,500만원)대비 △8.7% △36억 6,600만원 감액한 384억 4,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금년도 보다 △9.4%, △37억 1,800만원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임
- **사업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8,741억 9,200만원)보다 0.8%, 72억 4,800만원 증액한 8,814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20년도에 매각되지 않은 DMC F1, F2용지 매각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7,50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은 금년도 대비 5.9%, 72억 9,100만원 증액하여 사업수입이 일부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 **이자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428억 9,200만원)보다 △48.6%, △208억 4,200만원 감액한 220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여유자금 이자수입에서 △214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개편으로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신설된 바, 세외수입이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서 부과 및 징수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 따라서 기존 ①경상적 세외수입과 ②임시적 세외수입을 ③지방행정제재·부담금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임

□ '21년도부터 분리·신설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67억 7,400만원)보다 10.5%, 7억 1,300만원 증액된 74억 8,800만원이 편성된 바,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조치인 과징금과 행정질서 유지 및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금인 과태료를 금년도 보다 증액편성한 것으로 제출됨

○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성을 지니는 세외수입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신규 발굴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나

- 금년도의 4차례 추경예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세외수입 역시 시설운영 및 이용자 제한 등의 사회환경 변화 발생시 목표 세입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세수감소에 대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1,770억 6,900만원)보다 1.7%, 30억 2,300만원 증액된 1,800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는 바,

○ **보통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20년도에는 당초 1,56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내국세 총액 감소로 2차례의 정부추경을 통해 최종 1,40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1년도에는 금년도 최종예산(1,407억 8,200만원)보다 4.0%, 56억 4,000만원 증액한 1,464억 2,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예산안 편성 당시 중앙정부의 내시 통보가 없어, '19년 12월 30일 통보된 '20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에 기초하여 세입을 추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난 10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지방교부세 교부 예상금액 사전통지”를 통해 1,395억 8,7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기 제출된 '21년도 서울시 보통교부세는 편성안보다 △68억 3,500만원을 감액 조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253억 7,000만원)보다 32.7%, 83억원 증액된 336억 7,000만원으로 편성된 바,

- 보통교부세의 편성사례처럼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①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사업분 254억 6,100만원 및 ②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직 인건비분 82억 900만원의 합계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고 정부예산 확정후 소방안전교부세 내시액 등이 통보되고 있어

-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통보·교부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밀성과 안정적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하는 바,

- '20년도에는 어르신 무더위쉼터 홍보비 수입으로 1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 간주처리를 통해 107억 4,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109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21년도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세입예산안은 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수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의존재원으로서

○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20년도 최종예산(8조 609억 1,200만원)보다 △34.6%, △2조 7,930억 7,900만원이 감액된 5조 2,67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외 332개 사업에서 금년도 최종예산(7조 7,884억 1,200만원)보다 △35.8%, △2조 7,907억 8,400만원 감액된 4조 9,976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년도의 경우, 본예산(4조 9,898억 5,400만원)의결 이후 네 번의 추경과 13차례의 간주처리를 통하여 2조 7,985억 5,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비 및 피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 등으로 추가 교부된 사례가 있어 코로나19의 지속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포함한 21개 사업에 금년도 최종예산(418억 9,800만원)보다 55.4%, 231억 9,500만원

증액된 650억 9,400만원을 편성되었음

- 정부 기금의 경우, 157개의 사업에 금년도 최종예산(2,306억 100만원)보다 △11.1%, △254억 9,000만원 감액된 2,051억 1,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세입과목임

○ '21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채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285억원)보다 28.4%, 81억원 증액된 366억원으로 ①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건립에 240억원, ②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82억원, ③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에 24억원, ④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표 2-8〉 202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편성액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명	사업명	'21년도 지방채 편성액	세부 산출 내역
계			36,600	
1	지역발전본부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24,000	예산 : 25,333백만원 시비 : 1,333백만원 / 지방채 : 24,000백만원
2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8,200	예산 : 9,055백만원 시비 : 855백만원 / 지방채 : 8,200백만원
3	복지정책실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2,400	예산 : 3,376백만원 시비 : 976백만원 / 지방채 : 2,400백만원
4	푸른도시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2,000	예산 : 4,398백만원 시비 : 2,398백만원 / 지방채 : 2,000백만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461호 ('20.10.31)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과 회계간 전입금, 예탁 및 예수 등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조 46억 700만원)보다 △87.3%, △2조 6,219억 5,3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 '21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보전수입등**은 470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62억 6,700만원, 용자금원금수입 7억 4,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잉여금 수입이 즉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현재로서는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경을 통해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조치할 것으로 사료됨

□ '2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2조 3,821억 2,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0.9%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12조 4,768억 2,100만원)보다 △0.8%, △946억 9,1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임

○ '21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19년 전부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금년도부터 운용중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9〉 2021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1		2 0 2 0		증 감	
	예 산 안	구성비	최 종 예 산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0,047,933	100.0	45,004,840	100.0	△4,956,907	△11.0
일반회계	27,665,803	69.1	32,528,018	72.3	△4,862,215	△14.9
특별회계	12,382,129	30.9	12,476,821	27.7	△94,691	△0.8
공기업특별회계	1,660,292	4.1	1,881,153	4.2	△220,861	△11.7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738,100	1.8	814,191	1.8	△76,091	△9.3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922,192	2.3	1,066,962	2.4	△144,770	△13.6
기타특별회계	10,721,837	26.8	10,595,667	23.5	126,170	1.2

※ 자료근거 : 2021년도 세입예산안

-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10조 5,956억 6,700만원)보다 1.2%, 1,261억 7,000만원 증액된 10조 7,21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표 2-10〉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1	2 0 2 0	증 감			
	예 산 안 구성비	최 종 예 산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10,721,837	100.0	10,595,667	100.0	126,170	1.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407,773	13.1	1,421,558	13.4	△13,784	△1.0
교통사업특별회계	1,574,042	14.7	1,332,234	12.6	241,808	18.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6,773	3.0	367,276	3.5	△50,502	△13.8
주택사업특별회계	2,528,196	23.6	2,925,334	27.6	△397,138	△13.6
도시개발특별회계	2,125,797	19.8	1,918,296	18.1	207,501	10.8
균형발전특별회계	165,136	1.5	228,555	2.2	△63,419	△27.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624	0.2	23,358	0.2	2,266	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68,567	15.6	1,482,869	14.0	185,698	12.5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4,367	0.3	39,296	0.4	△4,928	△12.5
소방안전특별회계	875,557	8.2	856,888	8.1	18,668	2.2

※ 자료근거 : 2021년도 세입예산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4,215억 5,800만원)보다 △1.0%, △137억 8,400만원 감액된 1조 4,07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 세입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610억 7,000만원 감액편성되고,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보다 △599억 1,500만원 감액편성한 것이며, 감채기금으로부터 1,200억원을 전입받아 '21년도 만기가 도래한 도시철도공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됨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3,322억 3,400만원)보다 18.2%, 2,418억 800만원 증액된 1조 5,740억 4,2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기타회계전입금을 금년도보다 2,888억 7,600만원 증액편성하고 재정투융 자기금 예수금이 금년도보다 471억원 증액편성되는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액이 증액편성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672억 7,600만원)보다 △13.8%, △505억 200만원 감액된 3,167억 7,3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수입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수입에서 △896억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에서 금년도보다 △285억 2,100만원 감액편성되어 세입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9,253억 3,400만원)보다 △13.6%, △3,971억 3,800만원 감액된 2조 5,28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바,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금년도보다 1,716억 9,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나, 보조금이 금년도보다 △819억 3,000만원 감액편성되고, 지방채 발행 수입도 금년도보다 △4,183억원 5,000만원 감액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9,182억 9,600만원)보다 10.8%, 2,075억 100만원 증액된 2조 1,257억 9,700만원을 편성한 바,
-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회계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1조 2,321억 6,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285억 5,500만원)보다 △27.7%, △634억 1,900만원 감액된 1,651억 3,6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33억 5,800만원)보다 9.7%, 22억 6,600만원 증액된 256억 2,4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4,828억 6,900만원)보다 12.5%, 1,856억 9,800만원 증액된 1조 6,685억 6,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됨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92억 9,600만원)보다 △12.5%, △49억 2,800만원 감액된 343억 6,7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8,568억 8,800만원)보다 2.2%, 186억 6,800만원 증액된 8,755억 5,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됨

〈표 2-11〉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 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4,063,810	3,436,728	627,082	
일반 회계	교 통 사 업	691,936	414,155	277,781	
	(교통관리계정)	333,113	255,718	77,395	▸ 지방세 세입중 자동차세(주행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분
	(교통관리계정)	182,800	-	182,800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재원부족분 증액
	(주차장관리계정)	176,023	81,042	94,981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교통방송운영계정)	-	-	-	※'20. 2.17.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 스 출범으로 별도의 재단 예산을 수립·운 용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 별회계 설치조례」에 교통방송운영계정 조항 을 삭제하지 않아, 계정이 존치하고 있음
	주 택 사 업	352,046	316,874	35,172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176,023	158,437	17,586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도정계정)
	(재정비축진사업계정)	176,023	158,437	17,586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재촉계정)
	도 시 개 발	1,232,161	994,461	237,699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7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소 방 안 전	867,300	821,229	46,071	
	(지역자원시설세계정)	303,413	308,339	△4,926	▸ 지방세 세입중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분(100%) 추계에 따른 감액
	(소방안전교부세계정)	27,304	19,827	7,477	▸ 소방안전교부세 75%(법정전출)
	(소방안전일반지원)	536,580	493,062	43,518	▸ 소방안전특별회계 재원 부족분 지원
	의 료 급 여 기 금	830,924	772,382	58,542	▸ 의료급여대상자 증가 등 국비내시에 따른 법정시비부담금(국비50 : 시비50)증액
	균 형 발 전	89,100	117,448	△28,348	▸ 관악 창업센터 조성,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금년도 사업 준공으로 조정
공 기 업 하 수 도	99	94	5	▸ 독립유공자 및 후손 하수도 요금감면분 증액	
수 도 사 업	244	85	159	▸ 독립유공자 및 후손 수도 요금감면분 증액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305호 ('20.11.12)

〈표 2-12〉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634,772	581,763	53,009	
교통사업 (주차장관리)	교통사업 (교통관리)	175,086	175,086	-	▸ 증감없음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113,000	131,200	△18,200	▸ 국민주택사업계정 지원금 감액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198,000	220,200	△22,200	▸ 국민주택사업계정 지원금 감액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45,000	-	45,000	▸ 매출공채 상환액 증가(6,791억원 → 7,324억원)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지원금 증액
도시개발	광역교통시설	58,000	-	58,00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발행규모 축소(1,586억 → 1,110억)로 사업 지원금 증액
공기업하수도	수도사업	22,500	24,378	△1,878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 감소에 따른 감액
공기업하수도	수도사업	1,062	1,258	△195	▸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감액
한강수질	수도사업	3,831	4,018	△187	▸ 물이용부담금 징수액(1,7%) 감소에 따른 감액
한강수질	공기업하수도	18,293	25,623	△7,330	▸ 공공하수도 설치·운영비 지원 감액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305호 ('20.11.12)

〈표 2-13〉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1	2 0 2 0	증 감			
	예 산 안 구성비	최 종 예 산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10,721,837	100.0	10,595,667	100.0	126,170	1.2
자 체 수 입	1,392,852		1,086,489		306,363	28.2
경상적세외수입	830,142	13.0	633,872	10.3	196,270	31.0
임시적세외수입	132,927		161,062		△28,135	△17.5
지방행정제재 · 부 과 금	429,783		291,553		138,230	47.4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5,279,608		4,699,189		580,419	12.4
보 전 수 입 등	279,407	49.2	496,983	44.4	△217,576	△43.8
순세계잉여금	256,143		480,191		△224,048	△46.7
민간융자금 회 수 수 입	21,953		16,609		5,344	32.2
전년도이월금	1,310		182		1,128	619.7
내 부 거 래	5,000,201		4,202,206		797,995	19.0
전 입 금	4,772,555	3,901,943	870,612	22.3		
예탁금및예수금	227,645	300,262	△72,617	△24.2		
지 방 교 부 세 (특 별 교 부 세)	-	0.0	3,200	0.0	△3,200	△100.0
공 채 및 차 입 금	2,194,083	20.5	2,815,254	26.6	△621,171	△22.1
국 고 보 조 금 등	1,855,293	17.3	1,991,534	18.8	△136,241	△6.8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이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8.2%,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도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2.4% 증액편성 되었으나, 지방교부세(△100%), 공채 및 차입금(△22.1%), 국고보조금(△6.8%) 등의 세목에서 감액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8,152억 5,400만원)보다 △6,211억 7,100만원 감액된 2조 1,940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발행될 수 있는 공채 및 차입금에 대한 한도를 승인 요청한 것임

〈표 2-14〉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2 0 2 1 (예 산 안)	2 0 2 0 (최 종 예 산)	증 감	증 감 륜
계	2,194,083	2,815,254	△621,171	△2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91,950	1,202,348	△110,398	△9.2
매 출 공 채	773,850	772,600	1,250	0.2
모 집 공 채	318,100	429,748	△111,648	△26.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 집 공 채)	111,000	200,600	△89,600	△44.7
주택사업특별회계 (모 집 공 채)	245,650	664,000	△418,350	△63.0
도 시 개 발	710,683	713,106	2,423	0.3
모 집 공 채	702,500	669,600	32,900	4.9
정 부 자 금 채	8,183	2,306	5,877	254.9
지 방 공 공 자 금 채	-	41,200	△41,200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모 집 공 채)	34,800	35,200	△400	△1.1

※ 주1) 세입과목중 “지방채”로 매출공채, 모집공채,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포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때 매입하는 채권비용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도시철도매출공채 7,738억 5,000만원과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신림선 경전철 건설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을 위한 모집공채 1,281억원을 차입하고,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1,900억원의 지방채를 차환할 예정으로 금년도(1조 2,023억 4,800만원)보다 △1,103억 9,800만원 감액된 1조 919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810억원, 별내선(8호선 연장)광역철도건설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나 금년도 최종예산(2,006억원)원보다 △896억원 감액된 1,110억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개발 매입임대 사업을 수행하고자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6,640억원)보다 △4,183억 5,000만원 감액된 2,456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 채 81억 8,300만원, 서부간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모집공채 590억원 이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4,200억원,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860억원, 월드컵 대교건설 475억원 등의 사업비 부족분을 모집공채로 발행할 계획이나 금년도 지방채 세입예산(7,131억 600만원)보다 △24억 2,300만원 감액된 7,106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30억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방채 18억,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지방채 40억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지방채 140억원,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에 120억원 등 모집공채 348억원을 편성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정부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1조 9,915억 3,400만원)보다 △1,362억 4,000만원 감액된 1조 8,552억 9,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5〉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2 0 2 1 (예 산 안)	2 0 2 0 (최 종 예 산)	증 감	증 감 륜
소 계	1,855,293	1,991,534	△136,240	△6.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61,938	123,009	△61,070	△49.6
교 통 사 업	40,846	76,268	△35,422	△46.4
광 역 교 통 시 설	35,913	46,573	△10,660	△22.9
주 택 사 업	714,991	796,921	△81,930	△10.3
도 시 개 발	103,285	110,464	△7,178	△6.5
균 형 발 전	34,839	47,413	△12,574	△26.5
의 료 급 여 기 금	830,924	752,382	78,541	10.4
한 강 수 질 개 선	29,853	35,678	△5,824	△16.3
소 방 안 전	2,701	2,822	△121	△4.3

※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되어 있는 바, 결산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인잔액(세입-세출)에서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6〉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주1)}	2021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2020 결산상잉여금 (예상액)	결산상 잉여금 잔액
합 계	256,143	256,143	-
교통사업특별회계	32,436	32,436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292	14,292	-
주택사업특별회계	136,953	136,953	-
도시개발특별회계	64,177	64,177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87	3,587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324	3,324	-
소방안전특별회계	1,372	1,372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306 ('20.11.12)을 재구성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제출된 바,
 - '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31개 사업, 3조 5,803억 7,300만원이며, 일반회계(296개)와 특별회계(27개)의 예산사업으로 3조 5,768억원, 기금사업(8개)으로 35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성인지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검토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2조 2,611억 4,500만원(136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은 4,798억 1,200만원(144개 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은 8,394억 1,600만원(51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7〉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1년도	2020년도	증 감	증감률
총 계	331	3,580,373	3,025,020	555,353	18.3
예 산	323	3,576,800	3,019,739	557,060	18.4
일반 회 계	296	3,310,756	2,825,822	484,934	17.1
특별 회 계	27	266,044	193,917	72,126	37.1
기 금	8	3,572	5,280	△1,707	△32.3

-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을 검토하면 331개 사업을 41개 실·본부·국에 편성한 바,
 - 여성가족정책실은 87개 사업(1조 8,739억 4,000만원), 복지정책실은 44개 사업(9,386억 8,900만원), 경제정책실은 24개 사업(1,429억 200만원), 시민건강국은 24개 사업(737억 9,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4.6%, 3조 293억 2,600만원이 여성가족정책실을 포함한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의 경우와 같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출발점인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바, 결국 성과목표가 부실하게 설정될 개연성이 높아져 성평등 기대효과 및 성별 수혜 등을 분석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시 '20년 성별영향평가와 '19년 성인지결산서의 평가결과와 실적치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과 같이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8〉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21		2020		증 감	증감률
		예산액	%	예산액	%		
계	331개 사업	3,580,373	100.0	3,025,020	100.0	555,353	18.3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주1)}	839,416	23.4	789,551	26.1	49,865	6.3
	성별영향평가사업 ^{주2)}	479,812	13.4	348,828	11.5	130,984	37.5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주3)}	2,261,145	63.2	1,886,641	62.4	374,504	19.8

주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88)

주2)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주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표 2-19〉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	증감률
	사업수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총 계	331	3,580,373	100	3,025,020	100	555,353	18.3
대 변 인	1	170	0.0	1,014	0.0	△844	△83.2
서울혁신기획관	2	1,227	0.0	2,000	0.0	△773	△38.6
시민소통기획관	4	5,221	0.1	9,202	0.3	△3,981	△43.2
청 년 청	7	73,940	2.0	108,011	3.5	△34,071	△31.5
여성가족정책실	87	1,873,940	52.3	1,783,890	58.9	90,050	5.0
노동민생정책관	12	42,958	1.2	41,368	1.3	1,590	3.8
비 상 기 획 관	2	162	0.0	3,711	0.1	△3,549	△95.6
스마트도시정책관	2	421	0.0	419	0.0	2	0.5
남북협력추진단	2	138	0.0	218	0.0	△81	△36.9
민생사법경찰단	1	42	0.0	-	0.0	42	순증
기 획 조 정 실	5	64,624	1.8	67,904	2.2	△3,280	△4.8
소 방 재 난 본 부	4	2,537	0.0	9,122	0.3	△6,585	△72.1
경 제 정 책 실	24	142,902	3.9	171,574	5.6	△28,672	△16.7
복 지 정 책 실	44	938,689	26.2	405,169	13.3	533,520	131.6
도 시 교 통 실	8	80,589	2.2	135,179	4.4	△54,590	△40.3
문 화 본 부	12	8,862	0.2	16,242	0.5	△7,380	△45.4
기 후 환 경 본 부	3	5,686	0.1	1,023	0.0	4,663	455.9
행 정 국	10	17,198	0.4	28,036	0.9	△10,838	△38.6
재 무 국	-	-	0.0	51	0.0	△51	순감
평 생 교 육 국	7	11,232	0.3	11,973	0.4	△742	△6.1
관 광 체 육 국	13	55,244	1.5	59,501	1.9	△4,257	△7.1
시 민 건 강 국	24	73,795	2.0	86,433	2.8	△12,637	△14.6
도시공간개선단	1	5	0.0	3,080	0.1	△3,075	△99.8
공공개발기획단	3	1,305	0.0	3,135	0.1	△1,830	△58.3
기술심사담당관	2	65	0.0	399	0.0	△334	△83.6
안 전 총 괄 실	6	3,247	0.0	3,617	0.1	△371	△10.2
도 시 재 생 실	5	4,548	0.1	43,953	1.4	△39,405	△89.6
도 시 계 획 국	3	3,955	0.1	3,291	0.1	664	20.1
주택건축본부	6	149,682	4.1	1,492	0.0	148,190	9,931.1
푸 른 도 시 국	6	806	0.0	2,604	0.0	△1,798	△69.0
물순환안전국	1	543	0.0	1,035	0.0	△492	△47.5
지역발전본부	2	2,914	0.0	4,791	0.1	△1,878	△39.1
인 권 담 당 관	2	441	0.0	510	0.0	△69	△13.5
도시기반시설본부	-	-	0.0	727	0.0	△727	순감
한 강 사 업 본 부	3	1,224	0.0	1,214	0.0	10	0.8
인 재 개 발 원	3	1,403	0.0	2,802	0.0	△1,399	△49.9
서울역사박물관	2	632	0.0	799	0.0	△167	△20.8
시 립 미 술 관	2	281	0.0	649	0.0	△369	△56.8
감 사 위 원 회	3	449	0.0	657	0.0	△209	△31.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64	0.0	190	0.0	△127	△66.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5	9,233	0.2	8,034	0.2	1,200	14.9

※ 자료근거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9 재구성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바, '21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42개 실·본부·국에 대해 42개 전략목표, 215개 정책사업목표, 504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것임
- '20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43개 실·본부·국에 대해 43개 전략목표, 213개 정책사업목표, 505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1년도에는 법인으로 설립된 교통방송이 제외되고 지표수도 일부 축소(434→412) 된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 19로 인해 '21년도 서울시의 재정 운영 여건은 예년과 달리 유동적이고,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음에도 '21년도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등에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정운용 변수의 관리, 현실성 있는 성과 목표치 설정 및 성과계획서 수정 반영 등 적시성 있는 성과 운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0〉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1년도	2020년도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2	215	412	504	38,387,641	43,123,641	△4,736,045
대 변 인	1	1	2	2	1,621	1,736	△115
서울 혁신기획관	1	3	5	3	11,511	16,873	△5,362
시민소통기획관	1	4	11	10	91,796	106,546	△14,750
청 년 청	1	1	2	3	101,502	134,457	△32,954
여성가족정책실	1	7	13	19	2,752,619	3,205,675	△453,055
노동민생정책관	1	6	12	12	192,044	720,702	△528,658
비 상 기 획 관	1	1	2	6	3,010	6,954	△3,944
스마트도시정책관	1	6	12	17	95,149	176,276	△81,128
남북협력추진단	1	2	3	2	415	8,647	△8,232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248	1,541	△293
기 획 조 정 실	1	11	19	21	965,252	989,353	△24,101
경 제 정 책 실	1	11	16	26	593,969	1,008,020	△414,050
복 지 정 책 실	1	7	15	25	8,362,216	8,186,609	175,606
도 시 교 통 실	1	10	21	24	3,131,906	3,169,534	△37,627
문 화 본 부	1	11	16	33	502,990	593,421	△90,430
기 후 환 경 본 부	1	9	12	20	575,600	800,931	△225,331
행 정 국	1	9	12	15	3,594,229	6,505,857	△2,911,628
재 무 국	1	6	9	10	2,932,086	2,885,689	46,396
평 생 교 육 국	1	4	10	11	3,828,418	4,181,949	△353,531
관 광 체 육 국	1	7	11	19	229,411	248,997	△19,585
시 민 건 강 국	1	10	27	26	496,282	582,185	△85,903
도시공간개선단	1	1	2	2	27,790	25,877	1,914
공공개발기획단	1	1	2	1	6,402	8,676	△2,275
기술심사담당관	1	2	4	3	1,944	4,404	△2,459
안 전 총 괄 실	1	10	13	29	1,227,091	1,361,608	△134,518
도 시 재 생 실	1	9	12	21	1,557,104	1,367,771	189,333
도 시 계 획 국	1	6	6	11	21,841	34,729	△12,889
주택건축본부	1	8	15	20	3,248,800	3,575,064	△326,364
푸 른 도 시 국	1	10	16	27	709,757	638,881	70,876
물 순 환 안 전 국	1	4	4	8	168,668	206,121	△37,453
지 역 발 전 본 부	1	4	8	6	77,441	70,061	7,380
소 방 재 난 본 부	1	9	21	19	1,742,857	1,678,118	64,740
인 권 담 당 관	1	1	2	1	1,357	1,562	△206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16	6	917,762	370,603	547,159
한 강 사 업 본 부	1	2	6	10	76,709	90,158	△13,449
인 재 개 발 원	1	1	3	4	13,826	15,535	△1,709
서울역사박물관	1	1	3	5	14,285	16,238	△1,953
시 립 미 술 관	1	1	6	4	11,626	15,076	△3,450
교 통 방 송	0	0	0	0	0	17,892	△17,892
의 회 사 무 처	1	3	22	8	35,855	27,428	8,428
감 사 위 원 회	1	5	8	7	1742	1,847	△10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3	471	599	△12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	4	8	4	61,038	63,487	△2,449

3) 참여예산

-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13년도 예산부터 시민참여예산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의 참여예산은 ①시민참여예산, ②시민숙의예산, ③청년자율예산으로 구분되며 참여 대상사업, 참여방식, 사업기간 등에서 각각의 차이가 있음

〈표 2-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비교

구분	시민참여예산	청년자율예산	시민숙의예산
대상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참여방식	신규사업 제안(공모)	참여자 숙의를 통한 신규사업 제안	계속사업 숙의
사업기간	단년도 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운영부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집행부서	실·본부·국	청년청, 실·본부·국	실·본부·국
정책대상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청-8774 ('20. 6.25) "2020년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 재구성

- '21년도의 경우, 당초 참여예산은 ①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시민숙의형 5,300억원, 시민제안형(시민참여예산제) 700억원 등 총 6,000억원 규모와 ②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숙의형 400억원, 자치구숙의형 1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표 2-22〉 참여예산 당초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계(①+②)		650,000
① 시 민 속 의 예 산		600,000
	시 민 속 의 형 사 업	530,000
	시 민 제 안 형 사 업 (시 민 참 여 예 산 사 업)	70,000
② 청 년 자 율 예 산		50,000
	시 정 속 의 형 사 업	40,000
	자 치 구 속 의 형 사 업	10,000

- 시민숙의예산제 사업의 경우에는 ①시민숙의형사업 9,073억 9,000만원 (81개 사업), ②시민제안형사업(시민참여예산사업)중 광역제안형사업 278억 2,600만원(41개 사업), 광역협치형사업 58억 3,800만원(21개 사업), 구단위계획형사업 224억 5,000만원(1개 사업), 동단위계획형사업 43억 9,900만원(1개 사업) 등 총 9,679억 300만원(138개 사업)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의 경우에는 ①시정숙의형사업중 분과숙의형사업 42억 800만원(12개 사업), 특별기획형사업 174억 1,400만원(5개 사업), ② 자치구숙의형사업 48억 7,100만원(1개 사업)으로 총 264억 9,300만원 (18개 사업)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3〉 참여예산 총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수	예산액
계(①+②)		156	994,397
① 시민숙의예산 ^{주1)}		138	967,903
	시민숙의형사업	81	907,390
	시민제안형사업(시민참여예산사업)	57	60,513
	광역제안형사업	41	27,826
	광역협치형사업	21	5,838
	민주주의서울연계형	-	-
	지역참여형사업	-	-
	구단위계획형사업	1	22,450
	동단위계획형사업	1	4,399
② 청년자율예산 ^{주2)}		18	26,493
	시정숙의형사업	17	21,622
	분과숙의형사업	12	4,208
		특별기획형사업	5
	자치구숙의형사업	1	4,871

주1)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9572 ('20.11. 2)

주2) 서울특별시, 청년청-14755 ('20.10.29)

4)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1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5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197개 세부사업, 5,310억 1,6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고자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4〉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2020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2020→2021)	2021년도 예산액
총 계	197	(X307,438) 1,891,326	(X92,171) 531,016	(X180,207) 1,629,289
일반회계	79	(X222,731) 708,285	(X65,641) 176,752	(X132,588) 506,788
특별회계	118	(X84,707) 1,183,041	(X26,530) 354,264	(X47,619) 1,122,501
도시철도	8	(X6,000) 139,748	(X6,000) 33,318	(X5,300) 119,841
교통사업	19	(X1,529) 46,133	(X170) 11,149	(X1,450) 40,643
광역교통	10	(X41,460) 146,284	(X7,842) 24,531	(X26,300) 170,745
주택사업	12	(X3,253) 22,607	(X-) 9,900	(X-) 12,955
도시개발	56	(X27,318) 730,600	(X10,982) 246,818	(X13,139) 715,030
균형발전	11	(X3,966) 77,073	(X1,050) 27,185	(X890) 47,756
소방안전	2	(X1,180) 20,593	(X484) 1,360	(X540) 15,528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서울혁신기획관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사업별설명서 p.42)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5,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시민 혁신가(200명), 서울혁신 펠로우(50명)를 모집하여 시민주도의 사회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표 2-25〉 주요 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운영			
- 일정(안): 상반기: '21.5~6.(8주) / 하반기: '21.9.~10.(8주)			
- 장소: 서울혁신파크 및 혁신현장(온라인 강의 포함)			
- 대상			
· <u>시민혁신가</u> :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대상(학생, 공무원, 기업 등)			
· <u>서울혁신 펠로우</u> :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과 환경을 이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역량 있는 시민			
- 규모: 연 250여명(상, 하반기 각 125여명)			
· 시민혁신가: 200명(상, 하반기 각 100여명)			
· 서울혁신 펠로우: 50명(상, 하반기 각 25여명)			
- 주요내용			
· 시민혁신가 교육: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기본 중심의 교육 운영			
· 서울혁신 펠로우 교육: 사회문제 해결 역량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 공유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운영성과 공유('21년 6월 / 11월)			

※ 자료근거 :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47

- 시민 혁신가(200명)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소요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은 물론 예산집행기준에도 적법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됨
- 사업부서는 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예산편성기준」이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세출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조차 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예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 보조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경우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여 세출과목 수정을 통한 편성오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 적합한 예산과목을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차기 추경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순환 경제 기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p.63)

- 동 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순환하는 지역 순환 협력 체계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6〉 사무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역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00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추진 계획수립 및 용역 추진 등					(100)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에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구축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추진 계획을 통해 동 사업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면 지역순환경제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용역을 통해 권역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 용역의 과업내용은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권역별 자원, 실행주체 연계 및 협력 도출,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단순 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일반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사무관리비를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경우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7〉 세부추진계획

< 지역순환경제 협의체(TF) 구성·운영 >

- 구성목적: 지역순환경제 적용모델 기획 및 확산 도모
- 구성대상(안)
 - 시·자치구, 시교육청, 의회,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
- 운영: 월 1회 (※ 필요시 탄력적 운영 가능)
- 역할
 - 지역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자문
 - 권역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도출
 - 권역별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지역순환경제 적용방안 논의

< 운영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

- 용역기간: '21. 3월~12월 예정
- 과업내용
 -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 권역별 자원, 실행주체 연계 및 협력 도출
 -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공통 목표 설정, 주체별 역할분담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전환도시담당관-9321 ('20.11. 9),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추진 계획”

- 아울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편성은 학술용역 사전심사 이행 등 예산편성 전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편성한 사례는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중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의 경우에도 사업취지를 지역순환경제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순환경제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감소정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8〉 세부추진계획

지역 순환 경제 기반 조성 개요 (사업별설명서 p.63)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개요 (사업별설명서 p.57)
<p>○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u>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구축</u></p> <p>-소요예산 : 1억원</p> <p>-추진목적: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별 협력 체계 기반 마련</p> <p>-사업기간: 2021. 1.~12.</p> <p>-사업내용: 지역순환경제 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 협력과제 도출, 협력방안 마련 등</p>	<p>○민관산학 협업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u>지역 순환 경제 구축</u></p> <p>-소요예산 : 4억 8,400만원</p> <p>-추진목적: 자급자족률 향상을 통한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전환</p> <p>-사업기간: 2021. 1.~12.</p> <p>-사업내용: 지역문제 해결 민관산학 협업 실험실 운영</p>

2) 시민소통기획관

□ 시민 MCN 기반 구축 (사업별설명서 p.92)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광역협치형)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환경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①시민 미디어 활동가 교육 및 컨설팅(9,300만원), ②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활동지원(1억 5,000만원)에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이나 사업검토 및 심사과정중 기 추진중인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과 목적, 취지, 내용이 동일하며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부서 검토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조례는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통해 운영비성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적 사업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우수한 시민 크리에이터를 발굴, 양성하여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확산 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달성목표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달성목표를 “OO미디어 활동 참여인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단어선택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미디어 교육, 지원, 홍보 및 지원 등일 수밖에 없어 동일부서의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을 검토하면,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한 것임에도 “서울시민 미디어콘텐츠 축제 개최”를 기재하여 제출한 바,
 - 신규 행사성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 및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예산안 제출에 앞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혜자의 적절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실시되어야 하나,
 -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사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편성한 사례에 해당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시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사업내용 자체를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이나 기존 사업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고, 행사성 경비에 대한 구체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청년청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사업별설명서 p.26)

- 동 사업은 '20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 청년자율예산사업 중 자치구속의형 청년 자율예산사업(76개 사업)을 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억 8,200만원과 사무관리비 1억 8,900만원을 포함한 48억 7,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20년도에 100억원 내외의 자치구속의형 사업을 선정하고, '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결과 자치구속의형 사업으로 총 76개 사업이 선정되어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에 48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사업부서는 76개 자치구속의형 사업(48억 7,100만원)을 단 1개의 세부사업에 편성요청하며 7쪽 분량의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자치구별 예산 규모, 자치구별 세부 사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청년자율예산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정보 제공 미흡 사례에 대해 이미 지난 '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시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유사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로써 청년자율예산이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무관리비의 행정편의적 편성 사례

-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별설명서 p.33)
-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청년자율예산) (사업별설명서 p.43)
-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64)

-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 1억 6,5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29〉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액
사	무	관	리	비	165	
	①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 교육			50		
	◦온라인 교육 보완 및 추가 제작				(50)	
	②서울미래인재 홍보 및 DB 관리			55		
	◦인재추천심의회 운영 등				(3)	
	◦미래인재 뉴스레터 제작				(40)	
	◦미래인재 콘텐츠 제작				(12)	
	③청년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60		
	10,000,000원*6개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③청년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6,000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청년기획자를 대상으로 하여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사무와 직결되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 사례로 사료됨

-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청년자율예산)**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7억 3,500만원을 포함한 1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사무관리비(7억 3,500만원)중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6억 5,000만원)는 서울거주 만19세~34세 청년중 500명을 모집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이나,

〈표 2-30〉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사업내용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2021.12.
○ 지원대상 : <u>서울거주 만19세~34세 청년</u>
○ 사업수행주체 : 공공기관 및 강소기업,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
○ 추진방법 : 기업과 참여자간 매칭으로 현장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 사업의 주요내용 : 미래 신산업 분야 일자리모델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 자료근거 : 청년청, 사업별설명서 p.46

- 사무관리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행정사무와 직결된 지출에 한정되는 예산과목으로 결국 공무원이 주된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바,
-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의 수혜자는 동 사업 참여자(500명) 등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 사례로 사료됨
- 더욱이 사업설명서중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의 경우 ①디지털 뉴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2억원, ②그린 뉴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1억 5,000만원, ③공공서비스 뉴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1억 5,000만원, ④사회적경제 뉴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1억 5,000만원으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6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 바,
-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의결절차로 사업부서는 지출하고자 하는 사업과 내용 편성의 타당성이 사업별설명서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사업설명서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소요예산의 승인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만19~34세 고립, 은둔 청년 100명이며 공모를 통해 비영리단체가 수행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 4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도 사무관리비를 4억 5,000만원 편성요청한 사안을 단순히 ‘소규모 용역’에 지급하는 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사무관리비는 주된 수혜자가 결국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이나 청년 100명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지출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4억 5,0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하면서 “고립청년 종합지원체계 마련”이외에는 구체적인 세부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적정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1〉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450
고립청년 종합지원체계 마련				450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사업대상 : 만19~34세 고립, 은둔 청년 100명 내외 지원 ○지원방법 : 비영리단체 용역사업(공모)으로 시행 ○지원내용 : 고립청년 발굴 및 청년 사회관계망, 청년-가족 자조모임, 교육, 진로코칭, 재능탐색, 자립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					

□ 서울 청년수당 (사업별설명서 p.48)

○ 동 사업은 6개월간 월 50만원씩 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1년도 서울 청년수당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자 소득기준과 지급대상을 변경할 예정으로 사료됨

〈표 2-32〉 청년수당 지급 기준(안)

구 분		2 0 2 0	2 0 2 1	비 고
확정	연령	만19~34세	동일	
	미취업 기준	미취업자	동일	·고용보험 미가입자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참여가능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중위소득 50%초과 ~ 150%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제외(국민취업지원제도로 포괄)
	지원인원	3만명	2만명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 9천명 제외 ※예산요구액 기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수당 간 중복 점검	순차참여 가능(동일기간 중복참여 불가)	연내 중복참여 불가	
확정 예정	졸업후 기준	졸업후 2년 이후	졸업생 (졸업예정자 포함)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협의 중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청-15755 ('20.11.19)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현재까지 지급 대상 확대(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주요 시정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변경 관련 사전 협의

의 등 법정사항 준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 대상 변경에 대한 협의 이후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 사업부서는 지급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예산안은 소요예산의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 사례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년수당의 지급대상을 고려할 때 적절한 예산과목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지원대상이나 지원방식이 유사한 사업이 신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에 현행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설정내용중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을 삭제요구하거나 적절한 세출과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별설명서 p.59)

○ 동 사업은 심층상담이 필요한 저활력 청년 2,000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9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청년자율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 사업부서는 '21년도에는 지속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9억원)중 93.3%, 8억 4,000만원을 청년마음건강 심층상담을 위한 상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확인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는 주된 수혜자가 결국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으로써 심층상담을 위한 상담료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기준에 적법하지 못한 편성·지출 사례로 사료됨

- 사업부서가 심리상담료를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예산편성기준」이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써 세출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조차 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내용을 적법하게 수정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보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바, 현재 제출된 세출과목(사무관리비)을 수정할 경우에도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세출과목을 수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년자율예산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21년도에는 청년청 사업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열거된 “사회서비스”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지침은 ‘일회성 시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협의 대상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이 제출된('20.10.30) 이후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여성가족정책실

□ 사전 절차(민간위탁동의) 미이행 사업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별설명서 p.29)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617)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498)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별설명서 p.517)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은 마포구 소재 포스트타워 7층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39억 8,000만원이 포함된 39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10월,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이행여부에도 금번 정례회중 “심의예정”으로 기재한 바,
-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30일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31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43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중 '21년 5월 준공예정인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9,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부서가 지난 10월, 관련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20년 4월 심의결과 “적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어 예산심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한 내용을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저해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30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민간위탁금 167억 2,5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를 포함하여 932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민간위탁금의 경우, ①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 운영(청년자율예산) 1억 400만원과 ②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 운영(2억 5,900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 아동 60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③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억 4,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는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지난 10월,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바,
 -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30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

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에 따라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운영과 관련된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경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19년 10월 심의결과 “적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업별설명서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 대해 ’17년 8월 심의결과 “적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사업부서가 10월 16일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결과를 “적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와 별개로 예산심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부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전산개발비(1억 7,800만원)의 경우, 우리동네키움포털 콘텐츠 보강 및 운영을 위해 ①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 7,000만원과 ②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세출과목 중 **전산개발비**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감리비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기준에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감리의 경우,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비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와는 구분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②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비(1억 800만원)의 경우, **전산개발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정 세출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7,000만원)와 함께 일괄하여 **전산개발비**로 편성함으로써 행정안전부 기준은 물론 서울시 기준까지 준수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판단됨

5) 노동민생정책관

□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p.159)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광역협치형)으로 청년소상공인이 SNS를 활용하여 점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홍보 영상물(500개)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참여자(청년 소상공인 400명, 문화예술전문인력 100명)와 용역수행자간 협업을 통해 SNS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용역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400명 등의 가게홍보를 위한 SNS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가 편성·집행될 경우, 예산편성기준은 물론 세출예산집행기준까지 위반하는 편성사례가 될 수 있어 세출과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동 편성 사례의 경우, 지난 9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광역협치형 사업에 대한 선정 알림을 하며 일반용역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안내한 바 사무관리비는 수혜자가 공무원이며, 지출용도 또한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세출과목을 편성하도록 안내한 것은 기본적인 학습조차 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사료됨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225)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용역사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물류센터를 통해 우리농산물 배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표 2-34〉 2021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운영 계획 수립	'21. 1~'21.01	-	서울시 중소기업물류센터 활용검토를 통해 21년 사업실행 계획 수립
배송 및 물류체계 지원	'21. 2~'21.11	200	물류센터로부터 농산물 상점 배송 지원

- 동 사업이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 한 것이나 배송이라는 민간의 활동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지출용도에 적합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 보다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인 민간경상사업 보조나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만일 현 단계에서 편성요청된 세출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으나
 - 보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제출된 세출과목(사무관리비)을 수정하게 되면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세출과목을 수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물류센터에 운용 용역을 맡길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기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이미 서울남북부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운영중인 바,

- 사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우회편성한 것이 아니라면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센터에 용역비나 운영비 성격으로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한 편성·지출 사례인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뒀다 노래방!) (사업별설명서 p.228)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광역협치형)으로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코로나로 지친 영세사업자와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4,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 의하면,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체를 선정하여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2개소를 대상으로 ①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전통재래시장 방문하여 길거리 노래자랑, MC의 인터뷰 및 노래 심사 후 생계형 상품 즉석 제공, ②SNS 생중계 및 유튜브 편집영상 게재 홍보, ③12월 왕중왕전으로 뒀다 노래방 송년회 진행 등을 추진할 계획인 바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도 기재된 것과 같이 동 사업이 '코로나로 지친 영세사업자와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확산을 예측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바,

- 동 사업은 이른바 “코로나 3밀(密)”에 해당되는 밀집, 밀접 등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길거리 노래자랑을 통해 비말확산까지도 우려되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된 이후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스마트도시정책관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50)

- 동 사업은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분야 공공 복합건물인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금 107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동 사업의 민간위탁금에는 건물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증설 공사에 대한 소요예산 19억 3,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민간위탁사업의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소요예산은 통계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반영 필요

-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별설명서 p.121)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252)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투자사업에 대해 ①'20년도중 '19년도의 추진내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②평가결과가 '미흡' 인 경우, 소요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여 '21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③평가결과가 '보통' 인 경우,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 중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의 경우 서울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평가 결과 각각 '보통'으로 확인됨

〈표 2-35〉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사 업 명	평가결과	평가점수
인 공 지 능 서 비 스 구 축 운 영	보통	79
서 울 사 이 버 안 전 센 터 운 영	보통	76

○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보통’ 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21년도 예산편성시 금년도 최종예산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의 경우에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확인되어 금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오히려 증액 편성하고 있어 제출안에 대해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6〉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21년도 예산안	'20년도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인 공 지 능 서 비 스 구 축 운 영	719	560	159	28.5
서 울 사 이 버 안 전 센 터 운 영	3,872	3,307	565	17.1

7) 기획조정실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사업별설명서 p.279)

- 동 사업은 2021년도 9월중 2일간 다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3억 9,700만원을 포함한 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년도 본예산 편성시 행사운영비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자 축제 및 방역전문가 회의, 주한공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9월, 제4회 추경예산을 통해 행사운영비(4억 4,500만원)와 외빈초청여비(1억 5,000만원) 전액을 감액조정한 바
 - '21년도에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가 금년도 본예산대비 $\Delta 10.8\%$ 축소편성된 것이나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예측하여 통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 중 “2021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동 사업은 '21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사규모와 개최방향을 설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행사규모와 개최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3억 9,700만원)가 적정규모라고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확보를 우선시하여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등한시한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동 행사운영비(3억 9,700만원)가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될 것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세출재원의 한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 전액 감액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된 이후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삭감 필요 사업**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사업별설명서 p.307)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사업별설명서, p.319)
- 우수정책 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 (사업별설명서, p.338)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은 '20년도 본예산(1억 7,300만원)보다 △ 57.2% 감액된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20년도 본예산에 당초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을 사유로 지난 5월,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3,000만원을 감액한 바 있고, 지난 9월, 제4회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 불가”를 사유로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정한 바 있음

○ 편성요청된 국외업무여비(2,500만원)가 일부 사업내용을 축소하여 '20년도 본예산 편성액(7,500만원)보다 △66.7%,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요청된 것이나

〈표 2-37〉 국외업무여비 편성 비교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2 0	2 0	2 0	2 1
	예산액	사업량	예산안	사업량
국외업무여비	75		25	
◦해외사업 발굴 및 현지조사 - 2,500,000원×2명 (항공료 및 체재비, 다등급, 6박기준)	20	4회	15	3회
◦진출부서 사업수주지원 - 2,500,000원×2명×1회	15	3개 분야	10	2개 분야
◦해외도시 현지 정책워크숍 - 3,000,000원×5명×2회 (항공료 및 체재비, 나등급, 7박기준)	30		-	
◦해외도시협력관 파견 및 이전 여비	10		-	

※ 본예산 편성액 기준

- 지난 9월, 제4회 추경예산이후 현재까지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 국외업무여비를 지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코로나 19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된 이후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 한정하여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국외업무여비를 편성요청하고 있어 예산의 집행시기 등이 소요예산의 편성여부를 검토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료됨에도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추진기간을 기재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현 상황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은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을 포함한 6억 7,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1년 11월로 예정된 시티넷 총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900만원과 UCLG 및 메트로폴리스 회의 참가를 위한 2,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 등에 의하면 UCLG 및 메트로폴리스 회의의 경우, '21년 4월, ①중국 정저우에서 UCLG ASPAC 총회가 있고, ②중국 광저우에서도 메트로폴리스 총회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국외업무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기간	장소	예산안
국	외	업	무	여	비	30
		◦시티넷 총회 및 집행위원, 클러스터 회의 등 참가				9
		- 항공료 및 체재비, 다등급, 4박기준 (3,000,000원×3명)		'21.11 (예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
		◦UCLG 및 메트로폴리스 회의 참가				21
		- UCLG ASPAC 총회 항공료 및 체재비, 다등급, 4박기준 (2,500,000원×2명)		'21. 4.24~28	중국 (정저우)	5
		- 메트로폴리스 총회 항공료 및 체재비, 다등급, 4박기준 (2,500,000원×4명)		'21. 4. (예정)	중국 (광저우)	10
		- UCLG WORLD 이사회 항공료 및 체재비, 다등급, 4박기준 (3,000,000원×2명)		(미정)	(미정)	6

- **우수정책 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은 '21년 상반기중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WCS)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업무여비 1,070만원을 포함한 4,07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의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표 2-39〉 국외업무여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국	외	업	무	여	비	10,700
				’21년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가	10,700	
				- 항공료 (1,800,000원×3명)	5,400	
				- 체재비 (2호 가목, 5박 기준, 1,900,000원×2명)	3,800	
				- 체재비 (2호 나목, 5박 기준, 1,500,000원×1명)	1,500	

-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를 의학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불완전하며 세계적인 확산추세를 예측하는 것조차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상반기중 집행예정인 국외업무여비는 전액 삭감하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소방재난본부

□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사업별설명서 해당없음)

- 관련 법령은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편성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21년도 예산안중 소방안전교부세 336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는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336억 7,000만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안전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지출계획하고 소방재난본부(273억 500만원) 및 안전총괄실(63억 6,500만원)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①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3,034억 1,400만원), ②소방안전교부세(273억 500만원), 관련 조례에 따른 ③일반회계 전출금(5,365억 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 8,67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기타회계 전출금의 경우에는 내부거래로서 회계간 세부 전·출입 내역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전출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40〉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간 전출금·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타회계 전출금) (A)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기타회계 전입금) (B)		차액 (A-B)
계	867,300,157	계	867,300,157	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303,414,000	지원자원시설세 소계	303,414,000	0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계정)	89,749,335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정책사업비계정)	213,664,665	
소방안전교부세	27,305,000	소방안전교부세 소계	27,305,380	△380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계정)	8,208,940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정책사업비계정)	19,096,440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36,581,157	일반회계전입금 (인건비계정)	536,580,777	380

○ 사업부서 및 예산총괄부서가 편의성을 고려하여 “백만원” 단위로 예산액을 검토하고 편성하여 전출·전입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행정안전부 훈령은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전입·전출에서 차이가 발생한 규모(소방안전교부세 △38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8만원)가 소액에 해당되나 회계간 불일치 편성일 수밖에 없어 예산안 심사과정중 전입·전출간 예산액이 일치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경제정책실

□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별설명서 p.575)

- 동 사업은 '19년 5월부터 '23년 6월까지 양곡도매시장을 이전·신축하고,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자 설계비 및 측량비(7억 8,900만원)가 포함된 시설비(8억 8,900만원) 등 9억 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1〉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905
	시	설	비	889
		◦설계비 및 측량비		789
		◦설계공모 보상비		100
	시	설	부 대 비	16
		◦설계경제성 검토 등		16

- 관련 법령은 취득하려는 토지면적이 6,000㎡ 이상 이고, 처분하려는 토지면적인 5,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 받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기준의 경우에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후 시의회 의결 필요”하며 심사시기는 “해당 예산이 의결되기전”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서초구 양재대로 소재 현 양곡도매시장을 「양재 R&D 캠퍼스」 조성부지로 이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 ①농협경제지주 소유의 토지(8,389.10 m^2 , 서초구 양재동 229)와 ②하나로마트로 사용중인 시유지(10,184.80 m^2 , 도봉구 창동 1-10)를 교환 취득·처분하여 ①농협경제지주 소유의 토지(8,389.10 m^2)가 포함된 양곡도매시장(9,270.00 m^2)을 이전 조성하려는 것으로
- “해당 예산이 의결되기전”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아야 할 것인 바, 지난 11월 6일, 관련 계획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이후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절차적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 패션허브 운영 (사업별설명서 p.749)

- 동 사업은 서울 패션허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8월 12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보류’를 사유로 8월 21일 철회한 사실이 있고,
 - 지난 10월 16일 관련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20년 9월 심의결과 “적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조례로써 정하고 있고, 관련 조례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예산심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한 내용을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한 것은 물론 의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저해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30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10) 복지정책실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업별설명서 p.101)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5,200만원과 행사운영비 2,600만원을 포함한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①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②복지인프라 공공성강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 ③법인 및 시설 종사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2〉 소요예산 편성 비교 (2021~2019)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주1)}	2019년도 (본예산) ^{주1)}
계	78	98	123
사무 관리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 2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 2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 22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추진 30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추진 50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추진 50
		○법인 및 시설 종사 자, 담당 공무원 역 량 강화 26	○법인 및 시설 종사 자, 담당 공무원 역 량 강화 51
행사 운영비	○법인 및 시설 종사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26		

주1) 추경을 통해 증감조정된 내역 없음(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동일함)

○ 신규 행사성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예산안 제출에 앞서 사업의 목적성·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실시되어야 하나,

- 동 사업은 행사운영비(2,600만원)를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에도 사전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사업부서로서는 ③법인 및 시설 종사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는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조정하였을 뿐 신규 행사성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 신규 행사성사업이 아닌 기존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20년도중 '19년도 추진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사후평가마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주요재정사업평가 중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기존 계속사업에 해당되기에 이행대상이 아니라 하고, 사후평가의 경우에는 “예산과목”을 기준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행사 관련 통계목이 아니기에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 기준을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한 편성사례일 수밖에 없음

□ 지역 맞춤형 영유아 조기개입체계 구축하기 (사업별설명서 p.226)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광역협치형)으로 마포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을 편성요청 한 것임

- 시민참여예산사업 총괄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①동 사업의 목적이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제도화 및 ②제안자의 자치구(마포구)에서도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동 사업의 소관부서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부서로 지정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는 영유아 발달과정의 조기개입 및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육담당관(여성가족정책실), 건강증진과(시민건강국) 등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될 수 있고,
 - 기 시행중인 마포구외 나머지 7개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의견(한정된 네트워크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자(시민)와 참여예산총괄부서가 협의하여 사업부서를 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서가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도 있으나 사업별 설명서의 내용대로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부서 변경을 비롯하여 마포구를 제외한 다른 7개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지 등을 확인한 이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퇴원노인의 일상생활복귀를 위한 케어B&B(중간집) 시범운영

(사업별설명서, p.271)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병원과 집 사이의 정거장 이른바 ‘중간집’을 운영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4,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서를 검토하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연습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장치, 베리어프리(barrier-free) 적용시설 등의 시설설치비(1억 5,000만원), 재활·간호·돌

봄 서비스 제공비(1억 7,500만원) 등에 소요예정인 바,

- 관련 조례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계속사업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사업 지속성이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시민참여 예산 편성에 부적합”하다는 부서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미 운영중인 돌봄 SOS센터 사업과 유사함에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특정 자치구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기존사업을 일부 확대하거나 차별성이 확보된다면 서울복지재단이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고유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 기준은 사업명칭 부여기준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업명 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명을 통해 사업목적과 내용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 수정이 필요한 사업

-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업별설명서, p.274)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별설명서, p.286)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295)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p.374)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별설명서, p.431)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별설명서, p.436)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운영 (사업별설명서, p.499)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야 할 인건비와 수당 등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중 운영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통계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3〉 운영비성 경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으로 편성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별설명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영비성 경비
노 인 지 원 주 택 운 영	P.274	942	942
재 가 노 인 복 지 시 설 운 영	P.286	5,769	5,769
학 대 피 해 노 인 전 용 쉼 터 운 영	P.295	194	194
장 애 인 주 간 보 호 시 설 운 영	P.431	23,889	23,889
장 애 인 단 기 거 주 시 설 운 영	P.436	10,634	10,634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P.499	3,434	3,434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의 낮시간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38억 8,900만원을 포함한 239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사업부서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한 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안 심사과정중 운영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여성가족정책실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요청하고 있어 사업부서는 이를 참고하여 세부사업의 통계목 설정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세 부 내 역	예 산 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총 계	23,889
		○인건비	17,902
		-시설장	4,704
		-종사자	13,198
		○복지포인트	114
		○관리자수당	177
		○연장근로수당	765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55
		○운영비	1,270
		○중증다수시설 지원 (인건비 1인 추가지원)	3,220
		○중증다수시설 지원 확대 (인건비 1인 추가지원)	383

□ **오뚜기(행주산성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별설명서, p.559)

- 동 사업은 장애인가족 경영기업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건비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 1억 9,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은 관행적으로 예산확정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서 이외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없어 제출된 사업별설명서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동 사업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서를 검토하면, 장애인가족 경영기업을 활용하여 5~10명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업부서는 ①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 가족기업에 별도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②각 사업장 등의 여건이 상이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을 사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창출이라는 편성취지를 고려하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사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이미 정부의 장애인고용공단이 유사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동 사업을 통해 장애인가족 경영기업에 고용된 5~10명 정도의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단년도에 한정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 계속사업으로 유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사업부서가 부적격으로 제출할 당시의 의견과 서울시의 조례에 있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문화본부

□ 삼일로 창고극장 운영 (사업별설명서 p.50)

- 동 사업은 중구 소재 삼일로 창고극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8억 4,800만원이 포함된 10억 5,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심의예정’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미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실감형·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263)

- 동 사업은 남산창작센터에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대행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자 시설비 20억원과 사무관리비 2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5〉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200
	◦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기획자문위 운영			10
	◦	스튜디오 조성관련 실태조사 및 컨설팅			20
	◦	스튜디오 운영			170
		- 운영 인건비 (270만원×5명×3개월)			(40)
		- 사업비 (콘텐츠 제작 등, 3,000만원×4개)			(120)
		- 유지 관리비			(10)
시		설	비		2,000
	◦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2,000
		- 촬영장비 설치 (4K 카메라, 지미집, 스튜디오 조명 및 LED조정 설치)			(300)
		- 공연 영상 실시간 온라인 송출 시스템 구축			(1,100)
		- 공연 영상 제작 후반 스튜디오 설치			(600)

- 동 사업의 경우, 22억원의 소요예산을 신규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안 제출시점('20.10.30)을 경과한 11월 24일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여 제출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22억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시설비 20억원중 공연 영상 실시간 온라인 송출 시스템 구축(11억원)의 경우, 다른 실·본부·국은 정보통신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관련 규칙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통해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미리 심사받는 사례가 있으나
- 동 사업내용의 경우, 해당 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조차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없어 사업계획 수립후 추가적인 검토가 선행된 다음 적정규모의 소요예산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2억원)의 경우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스튜디오 조성관련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계획하는 것은 물론 “대행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의 지출용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도 단순한 ‘소규모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용역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열거하는 사무관리비의 주된 수혜자는 결국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이라는 점에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 사업체에 사무관리비를 지출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은 물론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 사례가 될 수 있어 적정예산과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예술·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추진(청년 자율예산)** (사업별설명서 p.267)

○ 동 사업은 청년 자율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6〉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액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984		
①문화예술융합교육 공간 조성				350		
◦교육환경 조성 및 설비 등 인프라 구축				(200)		
◦소프트웨어 및 필수장비 설치				(150)		
②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50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00)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행				(50)		
◦결과공유 전시				(100)		
③프로그램 전문인력 인건비				108		
④유지관리 등				50		
⑤자문회의 등 운영				17		
◦회의수당				(15)		
◦운영비				(2)		
⑥사업홍보				9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제반 경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소요예산으로 ①문화예술융합교육 공간 조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사업내용을 검토하면 교육환경 조성 및 설비 등 인프라 구축(2억원), 소프트웨어 및 필수장비 설치(1억 5,000만원)로써 결국 자본형성적 성격의 예산으로 사료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①문화예술융합교육 공간 조성에 대한 소요예산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문화 LAB 운영 지원(청년자율예산) (사업별설명서 p.270)

- 동 사업은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사업은 예산부서가 사업계획과 사전절차이행여부 등을 검토한 이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게 되나
 - 청년자율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6월경 제안자의 제안서를 확정된 이후 당해연도 12월, 시의회로부터 다음연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2월경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바,
 -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에 한계가 있고, 시의회에 제출된 사업별설명서도 최초 제안된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내용 자체를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술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예술계 진입단계의 청년 예술인 200명을 대상으로 LAB별 10명 내외의 청년예술인들을 공모·선발하여 20개 LAB을 운영하려는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도시문화 Lab”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명만으로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없어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7〉 도시문화 LAB 운영 지원(청년자율예산)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12.
 - 지원대상 : 예술계 진입단계의 청년예술인 (예술대학교 재학생 포함)
 - LAB별 10명 내외의 청년예술인들을 공모·선발하여 20개 LAB 운영(총 200명)
 - 사업내용
 - 지역/사회/도시 연계 예술활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예술인들과의 과정 운영에 강점이 있는 자치구문화재단, 문화예술기획 단체를 공모 및 선정하여, ‘도시문화 LAB’으로 운영
 - 진입 단계 청년예술인들의 서울의 지역/사회/도시 연계 활동(프로젝트) 지원 및 이를 위한 역량강화 과정 운영(LAB별 3~7개월)
 -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위탁
 - '21년 예산(안) : 1,400,000천원

※ 자료근거 :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72

- 아울러 동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억원을 편성요청 한 사업이나, 사업추진일정을 검토하면, 내년도 ①3~4월에 도시문화Lab 운영기관 공모 선정을 한 다음 ②5~8월 청년예술인을 공모선발, ③5~12월 도시문화Lab 운영을 계획하는 바,
 - 공모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이나 사업계획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미 서울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또다시 도시문화Lab 운영기관을 공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탁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현재의 불명확성을 더욱 가중시켜 사업효과는 물론 사업내용의 왜곡도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이미 사업부서가 ①사업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 4가지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②이미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액, ③중복사업 등의 사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자율예산으로 확정된 바,

-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의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도 구체화 시킨 이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사업별설명서 p.310)

○ 동 사업은 '21년 10월에 개최예정인 “2021 서울뮤직페스티벌” 등의 소요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행사운영비 12억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원을 포함한 14억 1,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①음악축제 개최로 시민에게 고품격 음악공연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②음악예술인·음악산업관계자 간의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축소·취소되어 11월 현재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2억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27억원 8,000만원)중 51.0%, 14억 1,9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보다는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8〉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2020년도 최종예산		2021년도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민간행사사업보조	200	0	200
◦글로벌 인디음악 축제 공모	150	0	150
◦유망 인디음악 축제 공모	50	0	50
행사운영비	2,780	1,419	1,200

□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사업별설명서 p.318)

○ 동 사업은 25개 자치구 합창단의 공연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1년도 9월중 세종문화회관에서 25개 자치구 시민합창단의 공연 및 초청가수 축하공연을 계획한 것으로 함께 만들고 즐기는 시민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표 2-49〉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행사운영비	70
◦장소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20
◦사회자 및 초청가수 섭외	7
◦행사준비 및 홍보(행사용역)	43
- 자치구 공연준비 지원 (25개 자치구×1,000,000원)	(25)
- 무대구성, 홍보 등	(18)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도 기재된 것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별 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에 집결하는 공연이 진행될 경우, 합창 자체만으로도 비말확산이 발생하며 “코로나 3밀(密)”에 해당되는 밀폐, 밀집, 밀접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 동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보건환경의 위기를 등한시한 예산편성사례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2) 기후환경본부

□ 민간인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삭감 필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29)
-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업별설명서, p.75)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사업은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을 포함한 3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환경 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한 소요예산 등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0〉 민간인국외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일시	장소	예산안	
민	간	인	국	외	여	비	20
	국제행사	참석				20	
	- 500만원 * 4명			(잠정) 6월	영국	20	

○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은 '21년 개최예정된 ICLEI(이클레이, 기후환경분야 세계지방정부 협력단체), C40(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을 포함한 2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1〉 국외업무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국	외	업	무	여	비	45
	◦ ICLEI 및 C40 등 주요 국제회의 참석 등			45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회의 개최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개최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편성된 민간인국외여비(2,000만원)와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4,500만원)는 비록 서울시의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소액에 해당될 것이나 전액 삭감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편성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맞춤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에너지 홍보사업**

(사업별설명서 p.277)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①태양광E카페 조성, ②홍보컨텐츠 제작, ③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2〉 사무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출내역	예산(안)	운영방안	주요내용
사무관리비	194		
①태양광E카페 조성	121	전문 업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	◦태양에너지 카페 운영 - 전시, 정보제공, 체험프로그램, 설치상담
②홍보컨텐츠 제작	50	입찰을 통해 전문 용역업체선정	◦태양광 홍보 및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③사례집 발간	23	입찰을 통해 전문 용역업체선정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실태조사 및 시민 인식조사

※ 자료근거 : 사업별설명서(p.278) 및 녹색에너지과-28989 ('20.10.29) 발췌

○ 사업별설명서와 관련 방침을 검토하면, 사무관리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①태양에너지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며 ②태양광 홍보 및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과 ③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실태조사 및 시민 인식조사는 입찰을 통해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의 지출용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서 공무원이 주된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수행방식이 전문 업체를 통한 용역임에도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은 물론 예산집행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예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 보조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경우라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여 세출과목 수정을 통한 편성오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적합한 예산과목을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차기 추경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입금 (사업별설명서 p.401)

○ 동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자 기금전출금 278억 2,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일반회계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명을 “전입금”으로 설정한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명 설정 오류로 사료되어 실제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전출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20년도 예산 심사시에는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사업명 부여시 전입·전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용역

(사업별설명서 p.454)

- 동 사업은 시설비 13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①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시설 환경영향평가용역(12억 8,100만원)과 ②입찰안내서 작성 용역(3,000만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표 2-53〉 시설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시	설	비		1,311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1,281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시설	입찰안내서작성	용역	30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 1,500만원초과 기술분야 용역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시설 환경영향평가용역(12억 8,100만원)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으로 확인됨에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출된 소요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절차적 요건을 이행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3) 행정국

□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 (사업별설명서, p.345)

- 동 사업은 종로구 OO동에 민주화운동 교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3억 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억 4,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4〉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47
	◦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센터 조성 의견수렴			11
	◦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수집			22
	◦	민주화운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100
시		설		비	301
	◦	민주화운동 교육센터 조성 토지매입비 등 부대경비			301

- 동 사업은 총사업비(65억원)가 30억원 이상인 홍보관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규칙에 따라 “기본설계 용역 전”에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 중앙투자심사('20.11. 3) 결과 “재검토”로 결정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됨
- 또한, 관련 법령은 건물 신축, 매입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편성요청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부터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 민주화운동 교육센터의 경우 매입하려는 토지와 신축하려는 건물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편성요청된 시설비(3억 100만원)를 승인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 제출('20. 10.30)된 이후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사업의 토지매입비 등 소요예산(3억 100만원)은 사전절차 이행 후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20년 9월 17일 “적정”으로 심의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와는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14) 재무국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104)

- 동 사업은 '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46억 5,693만원을 편성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출연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지난 8월 제출하였으나
 -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가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한바 있고,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는 관련 의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출연금은 관련 「출연 동의안」의 상정여부 및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 평생교육국

□ 서울시교육청으로 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77)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81)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85)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89)
- 일반·특별교육경비(교육경비보조) (사업별설명서 p.92)
-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교육경비보조) (사업별설명서 p.96)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별설명서 p.98)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정전출금을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진출하는 바,

- **지방세 전출**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통세의 10%를 교육청에 진출하는 것으로 1조 3,959억 3,0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담배소비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진출하는 것으로 2,610억 6,7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를 교육청에 진출하는 것으로 1조 7,305억 2,6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무상교육비의 4.5%를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82억 8,300만원을 교육청에 진출하고자 법정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중 1/2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73억 8,6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지원금(교육지원금의 10% 이내)을 포함한 비법정 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①일반·특별교육경비보조 352억 5,300만원과 ②입학준비금 121억 2,300만원을 합하여 총 473억 7,600만원(보통세의 0.32% 수준)을 조례상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입학준비금지원은 중1, 고1 신입생의 의류 및 스마트기기 등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중 30%를 서울시가 부담함에 따라 121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에 대해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생수를 136,698명으로 추계하고, 서울시는 134,703명으로 추계함에 따라 교육청과 서울시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기준금액의 규모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 추진 협의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 추계를 통보 받은 후 예산안 제출 전까지 별도 변경 통보를 받지 못하여 각 기관이 상이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총액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학생수는 사업비 추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판단됨

〈표 2-55〉 2021년도 입학준비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출과목	'21년도 (제출안)	산출내역
계			32,628	
서울시	입학준비금 (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	12,123	300,000원×134,703명 ^{주1)} ×30%
교육청	기타교육비지원 (입학준비금)	학교회계전출금	20,505	300,000원×136,698명 ^{주2)} ×50%

주1) 2020. 4. 1 기준, 초6학년과 중3학년 학생 수

주2) 2020. 4. 1 기준, 초6학년, 중3학년 외 특수·각종학교 학생수 추가 반영

○ 현행 서울시 조례는 조례상전출금의 규모를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 지난 10월, 조례상전출금의 전출규모를 0.5% 이상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가 12월 1일, 심의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에 따라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6〉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1년도 (제출안)	'20년도 (본예산)	증 감	지 원 근 거
지 방 세 출	1,395,930	1,400,083	△4,1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담 배 소 비 세 출	261,067	253,957	7,110	”
지 방 교 육 세 출	1,730,526	1,644,977	85,549	”
고 등 학 교 무 상 교 육 경 비 부 담 금 전 출	8,283	5,728	2,554	초 중 등 교 육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 교 용 지 매 입 비 부 담	7,386	13,821	△6,4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례 법
교 육 경 비 보 조 (입학준비금 포함)	47,376	67,299	△19,92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 례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별설명서 p.40)

- 동 사업은 15년이상 경과된 노후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2억 5,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지난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800개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1단계를 완료하고,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668개교를 완료할 예정으로 '21년도 사업대상은 165개교임
- '21년도의 경우, 서울시의 세부사업으로 ①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72억 5,900만원)와 ②교육경비지원(조례상전출금)중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40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도 노후화장실 개선에 167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표 2-57〉 학교 화장실개선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출과목	2021년도	2020년도	증감
계			28,034	46,237	△18,203
서울시	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259	10,370	△3,111
	②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조례상전출금 사업)	비법정전출금	4,075	5,750	△1,675
교육청	① 노후화장실 개선	시설비	16,700	30,117	△13,417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1)

○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생 등에게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1,872억 9,500만원) 보다 △122억 8,100만원 감액된 1,750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난 '18년 11월,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에 따라 금년도 고 2학년과 특수·각종학교 등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에 이어 '21년도에는 고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에 따른 급식인원 증가, 급식일수, 급식단가 등의 변동으로 금년도 학교급식지원비(1,857억 7,000만원) 대비 292억 2,000만원 증액되어 2,149억 9,100만원이 소요되나,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등교로 학교급식을 미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20년 명시이월액 400억원을 제외한 1,749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8〉 2021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동 내 역('20년도→'21년도)
급 식 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초 384,771명 → 382,000명(△2,771명) • 중(각종포함) 202,779명 → 206,492명(3,713명) • 고(각종포함) 148,271명 → 220,508명(72,237명) ※ 고1학년 추가 • 국·사립초 21,042명 → 21,610명(568명) • 특수학교 4,219명 → 4,330명(111명)
급 식 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초 181일 → 187일(6일) • 중(각종포함) 170일 → 172일(2일) • 고(각종포함) 170일 → 171일(1일) • 국·사립초 181일 → 187일(6일) • 특수학교 192일 → 192일(0일)
급 식 단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초 3,731원 → 3,768원(37원) ※ 교육청에서 인건비 별도 지원 • 중(각종포함) 5,610원 → 5,688원(78원) • 고(각종포함) 5,610원 → 5,865원(255원) • 국·사립초 4,827원 → 4,898원(71원) • 특수학교 5,226원 → 5,472원(246원)

※ 자료근거 : 2021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평생교육국) p.293

□ **느린학습자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225)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중 광역협치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청 소년상담복지센터를 사업수행주체로 하는 민간위탁금 6억 7,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예산편성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지침에는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을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의 승인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로서는 지난 '18년 4월, 관련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어 이를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동의로 확대 적용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 의회가 지난 '18년 4월 별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021년도 예산안중 시민참여예산으로 수탁기관에 위탁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에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원안가결"('18년 4월 13일)로 심의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 이는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가 아님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잘못된 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사업별설명서 작성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또한, 관련 조례의 심사기준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동 사업을 단년도에 한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을(3년이내) 정하여 사무 수행의 적정성 및 행정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 이를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 관련 조례의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동 사업이 관련 조례에 부합되는 사안인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6) 관광체육국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사업별설명서 p.71)

- 동 사업은 서울시 거주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25만원을 지원하여 실질적 휴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5억원이 포함된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9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휴가비 지원 축소 등에 따라 △5억원이 감액되어 지원대상인원도 금년도(3,800명)보다 △1,800명 축소된 2,000명분을 편성한 것이나

〈표 2-59〉 소요예산 편성 비교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규모	1,100	600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등 (250,000원x3,800명) 950 ◦관리운영비 등 100 ◦홍보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등 (250,000원x2,000명) 500 ◦관리운영비 등 100

- 금년도와 지원액(25만원)이 동일한 상태에서 지원대상인원만 △1,800명 축소함에 따라 휴가비지원금을 감액(△4억 5000만원) 편성한 것임에도 관리운영비의 경우 지원대상의 축소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와 동일 규모인 1억원을 편성한 바,
- 금년도와 비교하여 지원대상이 △47.4%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관리운영비 또한 △40% 이상 50% 미만의 범위에서 감액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금년도의 경우, 홍보비(5,000만원)가 별도 편성되어 편성요청된 관리운영비 1억원중 홍보비가 포함된 것일 수 있으나 동 사업이 이미 수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홍보비를 별도 편성하여 홍보할 만큼 사업대상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홍보비 편성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대상인원이 축소된 만큼 관리운영비도 연동하여 일부 축소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들이** (사업별설명서 p.87)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광역제한형)으로 전동휠체어, 스쿠터 급속충전기를 관광명소에 설치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서울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사업예산 전액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 대에 250만원으로 산정된 급속충전기 총 135대를 설치하는 것은 소모성 경비라 할 수 없는 자본형성적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이미 지난 '19년도에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시민참여)** 및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설정한 사례가 있어 동 사업의 예산과목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는 ①복지정책실에서 유사한 사업을 기추진하여 현재 서울시에는 500여대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예산편성

타당성이 부족하고,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경우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 제안자(시민) 및 참여예산 총괄부서(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협의 결과 급속충전기 135대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서조차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업의 소요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개최 (사업별설명서 p.132)

○ 동 사업은 '21년 6월, 서울 국제관광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7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는 금년도(8억 5,000만원)보다 △1억원 감액편성된 것이나 금년도에 편성된 행사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8억 5,000만원)중 10월 31일 현재 8억 3,6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으나 5억 850만원이 실제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31.1%, 2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 국제관광산업 박람회가 '21년 6월 개최될 예정이나 코로나 19에 대한 의학적 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확신할 수 없고, 이미 금년도의 경우에도 기편성된 소요예산의 실제 지출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박람회 개최가능성을 확실할 수 없어 편성된 예산액에 대한 추가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 마라톤 대회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1)

- 동 사업은 '21년 5월 여성마라톤 대회와 '21년 10월 서울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1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규모로 편성한 것이나 금년도의 경우, 여성마라톤 대회는 개인이 목표한 운동을 실시한 후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운용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내년도의 경우, ①10월 개최 예정인 서울달리기 대회는 참가규모를 1만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②5월 개최 예정인 여성마라톤 대회의 경우에도 참가규모를 1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1만명이 모여 서울광장과 삼암동 등 도심구간에서 마라톤 행사를 진행할 경우, 외부공간이라 하여도 마라톤의 특성상 일정구간 참가인원이 밀집되는 것은 물론 일정그룹별 밀집, 밀집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호흡을 통한 비말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60〉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행	사	운	영	비	180
	◦서울달리기 대회 - 위치 : 서울광장(출발지, 10km 골인지), 한강 뚝섬지구(하프코스 골인지) - 규모 : 일반시민 및 외국인 10,000명 - 사업기간 : 2021년 10월 경 - 사업내용 : 서울 도심과 한강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 개최 ※ 서울광장(출발지, 10km골인지), 한강 뚝섬지구(하프코스 골인지)			100	
	◦여성마라톤 대회 - 위치 :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광장 일대 - 규모 : 남녀노소 10,000명 - 사업기간 : 2021년 5월 경 - 사업내용 : 마라톤대회, 서울시 여성정책 홍보부스 운영, 각종 문화행사, 공연 등			80	

○ 만일 행사후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보건환경의 위기를 등한시한 사례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②5월 개최 예정인 여성마라톤 대회(8,000만원)의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사성 경비에 대한 사전절차(투자심사 등) 미이행 사업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 (사업별설명서 p.403)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410)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 (사업별설명서 p.415)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사업별설명서 p.422)

○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하면, ①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②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③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9월, 제4회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예산을 감액한 바 있음
- 내년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고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을 포함한 4개 사업에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관련 사업중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행 사 운 영 비	사업별설명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	2,000	p.40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지원	697	p.41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	434	p.4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372	p.422

○ 관련 법령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정

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을 통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칙에는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관련 규칙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지침에도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 주관행사’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의 경우, 행사운영비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전 투자심사가 이행되어야 하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로서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로써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서울시의 지침에도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 주관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투자심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법인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운용과 각종 체육대회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이며 전국체육대회부터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일 뿐 관련 법령에 근거한 투자심사를 법인단체의 규정으로 초월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중 “**국가 주관행사**”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2)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 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p.9

-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본계획에도 ①주최는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②주관은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투자심사 제외대상인 “**국가 주관행사**”라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사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시·도의 자체심사 대상이며 (중략) 해당사업과 같이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위 금액 기준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회신하여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을 포함한 4개 사업에 편성 요청된 행사운영비는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됨에도 현재까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2-62〉 행사운영비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행사운영비	사 전 절 차	
		투	(이행여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	2,000	투자심사	미이행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 지원	697	”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	434	”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372	”	”

- 다만, 현행 지침중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투자심사 제외대상으로 예시하고 있고,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행정안전부에 관련 매뉴얼 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전국체전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전국단위 행사라는 점에서 소요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미이행된 투자심사에 대한 보완대책이 제시된 이후 소요예산 편성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7) 시민건강국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별설명서 p.67)

- 동 사업은 '16년 3월부터 '21년 8월까지 서울의료원 인근에 지상5층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90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20년 1월, 사업부서가 동 사업의 건축규모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수립함에 따라 증가되는 시설비(82억 500만원)와 감리비(6억원), 시설부대비(2억 5,0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3〉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9,055	
시	설		비	8,205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공사비		8,205	
감	리		비	600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감리비		600	
시	설	부	대	비	250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부대비	250

- 동 사업의 경우, 취득하려는 건물의 당초 기준가격(142억 1,200만원)이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6년 5월,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고, '16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 공유재산심의(재심의)를 받도록 정하

고 있고,

- 관련 법령에는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건축규모 확대를 반영한 기준가격(233억 9,800만원)이 당초(142억 1,200만원)보다 64.6% 증가하여 공유재산심의 를 재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도 얻어야 하는 사안임
 - '20년 1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에도 '20년 4월, 공유재산심의 를 이행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계획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부서는 예산안 제출시점('20.10.30)을 경과한 12월 3일 현재까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 은 것은 물론 관리계획 수립의 선행절차인 공유재산심의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련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사업은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공유재산심의, 공유 재산관리계획 수립)를 이행하지 않아 소요예산(90억 5,5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전액 삭 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8) 공공개발기획단

□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별설명서 p.34)
- 서울혁신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상공모 관리 (사업별설명서 p.74)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사업별설명서 p.71)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는 서울시내 공공부지에 대해 기 수립한 기본구상 재검토,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 중 “사업내용”과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3월까지 2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20년 9월,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도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서울혁신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상공모 관리**는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에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①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경비 1억 5,000만원**과 ②**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 경비 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이 중 **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2억원)**의 경우, 타당성조사의 후속절차로 '21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소요예산(2억원) 중 '21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는 영등포구 문래동1가 소재 구로세무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 중 “사업계획”과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2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지난 '20년 9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는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20년 10월,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는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예산편성단계부터 소요예산 중 일부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 '21년도중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기재한 사례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20.10)한 결과 용역비가 당초 사업부서가 요청한 2억원에서 △1,600만원 감액조정 되었음에도 예산안에는 심사결과를 일체 반영하지 않고 당초 요청한 용역비(2억원) 전액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제도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3개

세부사업은 회계연도 중 집행하지 못할 사업비까지 미리 편성요청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출재원의 한정성과는 이질적인 편성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고, '21년도중 집행하지 못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의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요예산(2억원) 중 △1,600만원을 추가적으로 감액하고, 예산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사업별설명서에 사업부서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9) 안전총괄실

□ 사업명칭 부여기준 준수 필요

-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사업별설명서 p.84)

○ 행정안전부 기준은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음

- 사업명칭 부여 시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운영비, 시스템 기능개선비 등 4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통해 ‘장수명화’라는 사업의 목적과 ‘선제적 관리’라는 수단 모두를 표출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명칭 부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장수명화’의 경우, 주로 건설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건설 관련 용어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에 해당될 수 있어 ‘성능연장’, ‘사용기한 확대’ 등 보다 명확한 용어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 필요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사업별설명서 p.98)

- 동 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홍보비(2,0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료 10억 7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는 시민안전보험료(10억 700만원)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공공운영비가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를 지급하는 세출과목이나 공공요금 및 제세를 지출하는 용도로서 '21년도부터 공공운영비에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 이는 행정안전부의 규칙중 공공운영비의 성격, 즉, 행정사무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지출용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예산편성 및 운용기준도 일부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제출안대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보험료로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편성기준은 물론 세출예산집행기준 까지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민간이전중 보험금(307-06)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 도시재생실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실 사업별설명서 p.65)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금년도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년 2월,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시장방침을 수립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관련 규정에는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준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 관련 계획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예산편성 전)”으로 기재하고, “법정 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시 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예산편성 전)

※ 법정 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 ⇨ 건축기획 내실화 및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p.5

■ 뿐만 아니라 동 운영계획의 “행정사항”에는 ‘기존 설계비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로 일원화하고, (중략) 재정

기획관은 예산편성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일부 대체하여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법정 사항으로서 설계용역 입찰공고전, 예산편성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재생실 소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20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자 시설비 25억 5,700만원을 포함한 27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64〉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총			계	2,777		
사	무	관	리	비	111	
		◦자문단 및 코디 운영 등				(42)
		◦센터 운영비				(36)
		◦홍보 및 콘텐츠 제작				(25)
		◦유진아파트 가구 및 물품조성				(8)
공	공	운	영	비	3	
		◦유진아파트 관리비				(3)
기	타	보	상	금	15	
		◦설계공모 시상금				(15)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90	
		◦주민공동체 형성등				(50)
		◦도시재생대학 운영				(40)
시			설	비	2,557	
		◦유진상가 리모델링 용역				(2,126)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계속)				(430)

- 금년도 최종예산(4억 1,600만원)보다 23억 6,100만원 증액된 23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①유진상가 리모델링 용역(21억 2,6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25억 5,700만원, ②자문단 및 코디 운영 등(4,2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1,100만원, ③주민공동체 형성 등(5,000만원)을 포함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 시설비에 편성된 유진상가 리모델링 용역(21억 2,600만원)은 유진상가의 구조안전진단부터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비 등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제출됨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경우, 설계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되어 법령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나 사업부서가 11월 11일까지 동 사업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이 설계를 위하여 편성요청한 시설비는 전액 삭감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도 내부규정 등을 수립하며 예산편성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도록 법정 사항보다도 강화시켜 적용하고자 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령 개정후 금년 4월,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21년도 예산안이 제도적용 첫해로 사업부서 차원에서 적용대상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당 기념관 관리운영**(사업별설명서 p.74)

- 동 사업은 우당 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3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5〉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320	
사	무	관	리	비	50
			◦우당기념관 전시 기획 운영	30	
			◦우당기념관 활성화 프로그램	20	
민	간	위	탁	금	240
			◦우당기념관 민간위탁운영	240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시설 운영 필요장비 구매	30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0월 16일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사업소관 부서가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20년 10월 23일 “적정”인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어 부정확한 내용을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저해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30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사전 절차(출자·출연동의) 미이행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p.412)
-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사업별설명서 p.431)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매입하기 위한 출자금 56억 1,600만원을 포함한 193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출자금 11억 4,800만원을 포함한 59억 7,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21년도 예산안에 출자금을 편성하고자 지난 '20년 8월,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 '20년 9월,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 당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의 출자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출자하고자 지난 10월, 2건의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은 「출자 동의안」의 의결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21) 도시계획국

□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

-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연구 (사업별설명서 p.59)
- 권역별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사업별설명서 p.119)
- 광역중심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p.122)
-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마련 (사업별설명서 p.203)

○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정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 중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3월까지 3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년 8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에도 '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총 3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소요예산 중 일부는 이월을 전제하여 편성요청된 사례로 판단됨

○ 권역별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은 기술용역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 중 “사업내용”에는 '22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년도 추진일정”에도 '22년 4월까지 2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광역중심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기술용역을 계속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 중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는 '20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24개월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2

년 4월까지 1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한 사례로 판단됨

○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마련**은 저이용 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0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에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별설명서 중 “사업내용”과 “2021년도 추진일정”에도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12개월간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나,

- 동 사업은 이미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하고 실제 '21년도중 집행하지 못할 경비까지 편성요청 하고 있어 서울시가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외면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중 '21년도 집행분만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 주택건축본부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별설명서 p.133)

- 동 사업은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관리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업체에 위탁경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10억원과 민간위탁금 8억 5,400만원이 포함된 1,364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6〉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62,064
◦서울주택도시공사 교부금				62,064
- 위탁수수료 (66,100*217,454원)				(14,373)
- 공가관리비 (2,500호*62,150원×12개월)				(1,864)
- 수선유지비				(29,585)
- 특별수선충당금				(15,873)
- 선수관리비				(367)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72,570
◦임대보증금 반환금				72,352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218
- 2,000기*109,000원				(218)
민 간 위 탁 금				854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현3구역), 목동현대A 민간위탁금				854
민 간 위 탁 사 업 비				1,000
◦임대보증금반환금				1,000

- 동 사업에 편성된 소요예산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바, 서울시 조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기준은 조례에서 공사가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매입한 재개발임대주택 251개중 249개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관련 소요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620억 6,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72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를 신규 편성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는 지난 10월, 관련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금년도 말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개 단지의 통합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편성요청한 민간위탁금(8억 5,400만원)과 민간위탁사업비(10억원)는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11월 27일에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23) 푸른도시국

□ **공산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정비** (사업별설명서 p.121)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 1,500만원 초과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기술분야 신규 용역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른 기준에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지난 9월,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여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되며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예산안이 제출('20.10.30)된 이후 현재까지 기술심사 타당성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회신하였음

〈표 2-6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안)	(실시설계)
공산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정비	시설비	216	16

- 사업부서는 그동안 ‘유지관리 보조금은 자치구의 세입·세출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사업주관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용역발주기관 즉, 자치구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절차를 운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은 사업부서가 내부적으로 적용하였던 “보조금” 즉, 예산편성 당시 부터 자치구 교부가 전제된 자치단체경상보조나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를 편성요청한 사업인 바,

- 서울시의 사업부서에 편성되는 “시설비”는 예산안이 시의회로부터 확정된 이후라도 필요에 따라 자치구 재배정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예산과목이라는 점에서 “시설비”를 편성요청 할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부서가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서울시의 조례는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를 위반할 의도가 아니라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이 시공원을 유지관리하고 보수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여도 예산안이 제출('19.11. 1)된 이후 현재까지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시행의 타당성이나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시설비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 절차상 부적절한 사례로 사료되어 절차적 요건을 이행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4) 지역발전본부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23)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4억 5,800만원을 포함한 6억 1,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무관리비(4억 5,800만원) 중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작성 및 자문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표 2-68〉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616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7					
										◦ 초단시간근로자보수	7				
	사		무		관		리		비	458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20				
										◦ 국제교류복합지구 홍보물 제작 및 홍보	70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68				
										◦ <u>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작성 및 자문비</u>	200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기록화 및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	50				
										◦ 잠실운동장 일대 한강 하천구역변경 추진용역	50				
	공		공		운		영		비	44					
										◦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4				
	국		외		업		무		여	비	30				
										◦ 국외업무여비	3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31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업무추진	31
	특		정		업		무		경	비	45				
										◦ 특정업무경비	45				

- **협약안 작성 및 자문비(2억원)**의 경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재건축하고 MICE시설을 신규 도입하기 위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작성비와 자문비를 편성요청한 것이나,
 - 관련 법률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추정 총사업비(2조 1,672억 4,900만원)가 2,00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지난 '20년 9월, 기획재정부에 심의안을 제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20년 10월, 심의안을 수정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 12월 3일 현재까지 동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12월 3일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12월 16일 개최될 예정으로 확인되며, 관련 동의안은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예산안의 법정의결시한(매년 12월 16일) 내에 관련 절차가 모두 이행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협약안 작성 및 자문비(2억원)**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 실시협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것이나,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25) 도시기반시설본부

□ 서부선 건설(민자) (사업별설명서 p.28)

- 동 사업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4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소요예산(4억원) 중 ①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기 위한 경비 2억원과 ②실시협약 체결을 위탁하기 위한 경비 2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2-69〉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400
		◦ 사업제안서 평가 위탁			200
		◦ 실시협약 체결 위탁			200

- 관련 법률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BTO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총사업비(1조 5,203억원)가 2,00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지난 '20년 10월,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였으나, 12월 3일 현재까지 심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서울시의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관련 동의안에 대해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4억원)는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와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확정된 이후의 후속절차(사업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 소요예산(4억원)의 승인여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의 의결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6) 한강사업본부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122)

- 동 사업은 난지캠핑장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4,900만원이 포함된 8억 3,4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8월 12일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의결을 얻지 못하여 보류된 바 있고,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도 금번 정례회중 심의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음
- 민간위탁 동의의 경우, 관련 조례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 이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사일정(12월 1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광역협치형)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주제의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7,000만원)와 행사운영비(9,500만원) 1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0〉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역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70
①	시민토론회기획운영			23	
②	지역활동가 및 독서모임 회원 등 민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의제선정 등을 위해 지역활동가 및 독서모임 회원 등 네트워크 구축 운영			37	
③	토론회 결과보고서 제작			10	
행	사	운	영	비	95
①	수요 토론회 개최 (4회) - 장소대관(권역별 4개소) - 음향 대여 등 토론회 진행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등 운영 - 토론회 홍보 등			46	
②	토요 zoom 시민토론회 개최 (7회) - 화상회의 플랫폼 운영 및 회의 진행 - 사회자 및 전문가 패널 - 퍼실리테이터 운영			49	

- 행사운영비의 경우 수요 토론회(4회) 개최를 위해 4,600만원, 토요 zoom 시민토론회(7회) 개최를 위해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 코로나 19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역별 수요 토론회**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9,500만원)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71〉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	업	내	용
○	사업기간 : 2021.01~2021.12(연중)		
○	사업개요 : <u>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론장 상시 운영</u>		
○	사업내용		
-	시민 중심의 의제선정을 위한 의제선정단 운영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추진		
-	민주주의서울 홍보 및 온오프라인 공론화 홍보		

□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p.75)

- 동 사업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9,700만원을 포함한 3억 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중 협치리더 전문연수(3,800만원)는 협치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강의 및 토론, 멘토링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 사무관리비의 지출용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써 사무관리비의 주된 수혜자는 결국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으로 사료되는 바,

- 협치리더 전문연수는 협치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목적의 행사성 사업임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과목 설정에 있어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사례로 판단되는바,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통계목)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72〉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38
협치리더 전문연수	38
◦ 협치리더 전문연수 운영(교과개발, 홍보, 교육 등 용역)	35
- 인건비(교과개발 등)	(8)
- 교육진행비(대관비, 강의비 등)	(20)
- 회의비(진행비, 수장 등)	(2)
- 기타 경비(제잡비, 부가세 등)	(4)
◦ 자문 및 평가회의 운영(수당, 운영비 등)	2
◦ 심사평가 운영(수당, 운영비 등)	1

□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98)

- 동 사업은 민간위탁금 19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대비 2억 9,1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바, 단계적 개소 예정이었던 서남권NPO지원센터 신규(추가) 개소에 따라 인건비 등 소요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및 서울시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보통' 인 경우,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

도,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1년도 예산편성시 금년도 최종예산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확인되어 제출안에 대해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73〉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1년도 예산안	'20년도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982	1,691	291	17.2

-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사업중 동 사업과 동일하게 공익활동가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나 사업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여 사업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는바, 사업대상에 대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한 사업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 검토의견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 서울시의 조례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도 지난 10월, ①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의 관리를 서울시설공단에 신규로 업무대행하고자 관련 「대행 동의안」 을 제출하고, ②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신규로 업무대행하고자 관련 「대행 동의안」 을 제출하였음
 - 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의 경우, '20년 12월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11월 24일 심의(동의)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②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의 경우에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남산예장자락 주차장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의할 예정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17년 1월부터 서울시설공단 위탁사무 23건에 대해 민간위탁 혁신계획('16. 6)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대행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대행사무 관리방안을 보완한 사례가 있으며
 - 지난 '17년도에 서울시설공단외 기타 투자·출연기관은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승인만으로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등 기관별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 상이하여 일관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자 조례개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을 제외한 4개 공사·공단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대행사무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행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 대행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가 일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조정필요

- 지난 6월 일부 개정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중인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동 법에 따라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1,651억 3,600만원)의 1.1%, 18억 3,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안 심사중 예비비를 일부 감액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74〉 회계별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총액 (A)	예비비 편성액 (B)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 (B) / (A)
일 반 회 계	27,665,803	188,753	0.6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07,773	487	0.03%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574,042	61	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6,773	74	0.02%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528,196	3,693	0.1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125,797	751	0.04%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65,136	1,833	1.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624	123	0.4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68,567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4,367	338	0.99%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	875,557	8,527	0.97%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738,100	7,265	0.9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2,192	787	0.0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예산담당관-13305 ('20.11.12)

(4) 공기업특별회계

1)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6,480억 4,600만원, ②지출 5,513억 9,7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900억 5,300만원, ②지출 1,867억 2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7,38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5〉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738,100	738,100
사 업 예 산	648,046	551,397
자 본 예 산	90,053	186,702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서(안)」, P.23 “2021년도 예산총괄”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총규모는 7,381억원으로 '20년도 최종 예산(8,141억 9,100만원)보다 △9.3%, △760억 9,100만원 감액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감소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수익**은 금년도 최종예산 6,227억 1,600만원보다 △375억 1,500만원 감액된 5,852억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최종예산 672억 4,600만원보다 △404억 100만원 감액된 268억 4,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6〉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738,100	814,191	△76,091	△9.3
	상수도사업수익	648,046	687,877	△39,831	△5.8
	영업수익	615,209	653,113	△37,903	△5.8
	상수도사용료수익	585,200	622,716	△37,515	△6.0
	급배수공사수익	26,845	27,041	△195	△0.7
	기타영업수익	3,163	3,356	△193	△5.8
	영업외수익	32,836	34,763	△1,927	△5.5
	이자수익	1,763	2,324	△561	△24.1
	타회계전입금수입	24,559	26,474	△1,915	△7.2
	기타영업외수익	6,513	5,964	549	9.2
	자본적수입	90,053	126,314	△36,260	△28.7
	유형자산처분	5,703	1,635	4,067	248.7
	재산매각수입	5,703	1,635	4,067	248.7
	자본잉여금수입	43,851	42,556	1,294	3.0
	시설분담금수입	32,358	33,206	△847	△2.6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1,492	9,349	2,142	22.9
	유보자금	40,499	82,121	△41,622	△50.7
	순세계잉여금	26,844	67,246	△40,401	△60.1
	미수금	13,654	14,875	△1,220	△8.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12791 ('20.11.18) 자료 재구성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7,381억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 (8,141억 9,100만원)보다 △9.3%, △760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 **영업비용**은 '20년도 최종예산 5,616억 9,600만원보다 △2.8%, △157억 1,400만원 감액된 5,459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유형자산취득**은 '20년도 최종예산 1,603억 3,600만원보다 △4.0%, △64억 6,400만원 감액된 1,668억 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유동부채상환**은 '20년도 최종예산(581억 1,3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12년도 요금 동결 이후 낮아지는 요금 현실화율에 따른 당기 순손실 증가와 '20년도 코로나 19 및 긴 장마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급감 등에 따른 세입감소로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액 877억 5,700만원을 '22년도 이후로 연기한 것임

〈표 2-77〉 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유예 및 연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당 초	상 환	-	58,113	58,700	-	116,813
	연도말 잔액	116,813	58,700	-	-	-
변 경	상 환	-	29,056	-	87,757	116,813
	연도말 잔액	116,813	87,757	87,757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9934 ('20. 9. 1) "20년 차입금 상환유예 및 연기계획", p.5 자료 재구성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47억 6,500만원, (2)자본예산은 2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78〉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0(최종예산)		증 감	
		%		%		%
계	738,100	100	814,191	100	△76,091	△9.3
상수도사업비용	551,397	74.7	570,368	70.0	△18,971	△3.3
영업비용	545,981	73.9	561,696	68.9	△15,714	△2.8
영업외비용	650	0.0	1,200	0.1	△550	△45.8
예비비	4,765	0.6	7,472	0.9	△2,706	△36.2
자본적지출	186,702	25.3	243,823	29.9	△57,120	△23.4
유형자산취득	166,801	22.6	160,336	19.6	6,464	4.0
무형자산 및 기타유동자산취득	1,395	0.1	4,233	0.5	△2,838	△67.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6,005	2.1	20,640	2.5	△4,634	△22.4
유동부채상환	-	-	58,113	7.1	△58,113	△100
예비비	2,500	0.3	500	0.0	2,000	4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12593 ('20.11.13) 자료 재구성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7,804억 6,600만원, ②지출 5,419억 8,6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1,417억 2,500만원, ②지출 3,802억 5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9,221억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9〉 2021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922,192	922,192
사 업 예 산	780,466	541,986
자 본 예 산	141,725	380,205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서(안)」, P.15 “예산총괄표”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1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총규모는 9,221억 9,2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1조 669억 8,100만원)보다 △1,447억 8,900만원 감액 편성한 바,
- 세입 예산의 경우, 수도 사용량 감소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금년도 최종예산(7,622억 6,100만원)보다 △668억원이 감액된 6,954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최종예산(1,327억 1,000만원)보다 △897억 1,000만원 감액된 43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922,192	1,066,981	△144,789	△13.6
사	업 수 익	780,466	850,755	△70,289	△8.3
영	업 수 익	752,752	818,764	△66,012	△8.1
	사 용 료 수 익	695,461	762,261	△66,800	△8.8
	기 타 영 업 수 익	57,291	56,503	788	1.4
영	업 외 수 익	27,714	31,991	△4,277	△13.4
	이 차 수 익	7,064	9,864	△2,799	△28.4
	타회계전입금수입	18,393	20,260	△1,867	△9.2
	기타영입외수익	2,256	1,866	389	20.9
자	본 적 수 입	141,725	216,225	△74,499	△34.5
투	자 자 산 처 분	40,000	9	39,990	428900.4
	대 여 금 회 수 수 익	-	9	△9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000	-	40,000	-
자	본 잉 여 금 수 입	41,622	62,702	△21,079	△33.6
	시 설 분 담 금 수 입	40,534	42,089	△1,555	△3.7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	13,914	△13,865	△99.7
	공 사 부 담 금 수 입	1,040	6,699	△5,658	△84.5
유	보 차 금	60,102	153,513	△93,410	△60.8
	순 세 계 잉 여 금	43,000	132,710	△89,710	△67.6
미	수 금	17,102	20,803	△3,700	△17.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5132 ('20.11.23) 자료 재구성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9,221억 9,200만원으로 '20년도 최종예산 1조 669억 8,100만원보다 △13.6%, △1,447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 **영업비용**은 '20년도 최종예산 5,082억 4,100만원보다 6.6%, 333억 4,200만원 증액된 5,415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유형자산취득**은 '20년도 최종예산 2,173억 5,300만원보다 △22.2%, △482억 3,200만원 감액된 1,69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20년도 최종예산 2,572억 5,600만원보다 △19.5%, △501억 9,600만원 감액된 2,070억 5,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기타자본적지출** 36억 4,000만원은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4억 200만원, (2)자본예산은 3억 8,5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8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0(최종예산)		증 감	
		%		%		%
계	922,192	100	1,066,981	100	△144,789	△13.6
사 업 비 용	541,986	58.8	508,921	47.7	33,065	6.5
영 업 비 용	541,584	58.7	508,241	47.6	33,342	6.6
예 비 비	402	0.0	679	0.1	△276	△40.8
자 본 적 지 출	380,205	41.2	558,060	52.3	△177,854	△31.9
유 형 자 산 취 득	169,120	18.3	217,353	20.4	△48,232	△22.2
비 가 동 설 비 자 산 취 득	207,059	22.5	257,256	24.1	△50,196	△19.5
비 유 동 부 채 상 환	-	-	-	-	-	-
기 타 자 본 적 지 출	3,640	0.4	83,000	7.8	△79,360	△95.6
예 비 비	385	0.0	450	0.0	△65	△14.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5142 ('20.11.23) 자료 재구성